



제1681호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        |       |
|--------|-------|
| 선<br>람 | 기관의 장 |
|        |       |

훈 령

- 훈 령 제 3 9 7 호 남동구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 감 사 실

예 규

- 예 규 제 8 8 호 남동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감 사 실  
○ 예 규 제 8 9 호 남동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안 의 회 사 무 국

공 고

- 공 고 제 9 5 1 호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무 과  
입법예고  
○ 공 고 제 9 5 3 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시정조치(개선명령) 반송분 공 자동차관리과  
시송달 공고  
○ 공 고 제 9 6 4 호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건 강 증 진 과  
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공 고 제 9 6 5 호 취득세 고지서 공시송달(주소불명) 세 무 과  
○ 공 고 제 9 8 0 호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 총 괄 과  
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공 고 제 9 8 3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림2지구 소로3-7호선)사업 공 도 시 재 생 과  
사완료 공고  
○ 공 고 제 9 8 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장동 소로1-10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공고·열람 도 시 재 생 과

고 시

- 고 시 제 3 9 호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 고시 토 지 정 보 과  
○ 고 시 제 4 0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 고 시 제 4 1 호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 도 시 재 생 과  
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 시 제 4 2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        |  |  |  |  |  |  |  |  |
|--------|--|--|--|--|--|--|--|--|
| 회<br>람 |  |  |  |  |  |  |  |  |
|--------|--|--|--|--|--|--|--|--|

## 훈 령

남동구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2년 5월 12일

남동구 훈령 제397호

## 남동구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

남동구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동구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 등”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부조리 행위를 포함한다.
2.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감사실에서 처리한 신고사건의 신고자를 말한다.
  - 가.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자
  - 나.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자
  - 다. 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3.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4.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6. “공직자”란 법 제2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직자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부패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부패행위 등의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①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 등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 등을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감사실장을 부패행위 등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23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부패행위 등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소속 공직자에 대한 부패행위 등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행위 등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을 실시한 직원은 그 상담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상담처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등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 등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상담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법 제58조에 따른 신고라고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등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신고자의 성실의무) 부패행위 등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타 기관에서 이첩·송부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패행위 등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남동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⑤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 또는 이첩·송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패행위 등 신고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조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재이첩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의2(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

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7조의3(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과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

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8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구에서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구 또는 타 공공기관에서 해당 부패행위 등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장 신고자의 보호 등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공직자는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 또는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  
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  
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  
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공직자는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등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  
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책임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

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제15조(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구청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 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신고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16조(협조자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보상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2조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은 조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책임관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상금 지급신청 접수부(별지 제9호서식)

## 2.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서(별제 제10호서식)

**제1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구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에서 처리한 부패 행위 등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8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부패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등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구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부패행위 등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

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14조 개정규정은 2022. 7. 5.부터 시행한다.

■ 남동구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신 고 상 담 처 리 부

| 담당자 | 담당 |
|-----|----|
|     |    |

|               |                                                                 |                |  |
|---------------|-----------------------------------------------------------------|----------------|--|
| 상담일자          | 20 . . .                                                        | 상담자<br>(직급·성명) |  |
| 상담유형          | [ ] 전화                      [ ] 방문                      [ ] 인터넷 |                |  |
| 피상담자<br>(민원인) | 성명                                                              | 전화번호           |  |
|               | 주소                                                              | 관련기관           |  |

상담요지

상담결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남동구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남동구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부 패 신 고 접 수 관 리 대 장

[illegible]

## ■ 남동구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접수증

접수번호: 20                      신고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 목:

신 고 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ㄴ      ㅁ      ㅂ

남동구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접수증

접수번호 : 20                      신고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 목:

신 고 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21      22      23

남동구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남동구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등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 우리 구에서는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보상금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신고제도안내>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 남동구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      |  |                     |  |
|-------------------|------|--|---------------------|--|
| 신고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br>(외국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연락처  |  |                     |  |
| 부패행위<br>등<br>신고사항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제 목  |  |                     |  |

|              |                                                                                                                                                                                                                                                |
|--------------|------------------------------------------------------------------------------------------------------------------------------------------------------------------------------------------------------------------------------------------------|
| 신분공개<br>동의여부 | <p>1. 조사·처리과정</p> <p>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조사·확인 또는 심의 등의 절차(내부 결재 및 신고자 보상 절차 등 포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p> <p>⇒ [    ] 동의      [    ] 부동의</p>                                                     |
|              | <p>2. 타 조사기관 이첩(송부)과정</p> <p>귀하의 신고사건이 타 조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되는 경우,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송부)하게 됩니다.</p> <p>⇒ [    ] 동의      [    ] 부동의</p>                                |
|              | <p>3. 수사기관의 수사과정</p> <p>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p> <p>⇒ [    ] 동의      [    ] 부동의</p> <p>※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p> |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남동구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                                                          |                                                                     |                                 |          |
|------------------------------------------------------------------------------------------------------------------------------------------------------------------------|----------------------------------------------------------|---------------------------------------------------------------------|---------------------------------|----------|
| ① 추천기관                                                                                                                                                                 | 추천기관명                                                    |                                                                     |                                 |          |
|                                                                                                                                                                        | 소관부서                                                     | (전화번호)                                                              |                                 |          |
| ② 포상금<br>지급대상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연락처                                                      |                                                                     |                                 |          |
|                                                                                                                                                                        | 소속                                                       |                                                                     |                                 |          |
|                                                                                                                                                                        | 직업(직위)                                                   |                                                                     |                                 |          |
|                                                                                                                                                                        | <input type="checkbox"/> 내부 신고자                          |                                                                     | <input type="checkbox"/> 외부 신고자 |          |
|                                                                                                                                                                        | <input type="checkbox"/>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                                                                     |                                 |          |
| ③ 추천사유                                                                                                                                                                 |                                                          |                                                                     |                                 |          |
| ④ 조사결과                                                                                                                                                                 | 신고 접수기관                                                  |                                                                     | 신고일자                            | 20 년 월 일 |
|                                                                                                                                                                        | 신고내용                                                     |                                                                     |                                 |          |
|                                                                                                                                                                        | 조사·수사기관                                                  |                                                                     | 결과<br>통지일자                      | 20 년 월 일 |
|                                                                                                                                                                        | 통지내용                                                     |                                                                     |                                 |          |
|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br>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 청구여부                                                     | <input type="checkbox"/> 있음 (기관명 : )<br><input type="checkbox"/> 없음 |                                 |          |
|                                                                                                                                                                        | 수령여부                                                     | <input type="checkbox"/> 있음 (금액 : )<br><input type="checkbox"/> 없음  |                                 |          |
| <p>「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p>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남동구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부패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의 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해당 기관의 지도·감독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시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 기관에 신고하 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허위신고를 하면 신고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경우는 신고 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범상 보호조치 신청은 어렵습니다.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패신고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권익위 신고자에 한함)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공공기관 수입의 4~30%를 지급하지만,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 보상금 지급신청 접수부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접수방법 | 신청인 인적사항 |  |               |  | 관련부조리<br>신고 번호 | 신청내용 |
|------|------|------|----------|--|---------------|--|----------------|------|
|      |      |      | 성 명      |  | 생년월일<br>(남/여) |  |                |      |
|      |      |      | 주 소      |  |               |  |                |      |
|      |      |      | 연락처      |  |               |  |                |      |
|      |      |      | 성 명      |  | 생년월일<br>(남/여) |  |                |      |
|      |      |      | 주 소      |  |               |  |                |      |
|      |      |      | 연락처      |  |               |  |                |      |
|      |      |      | 성 명      |  | 생년월일<br>(남/여) |  |                |      |
|      |      |      | 주 소      |  |               |  |                |      |
|      |      |      | 연락처      |  |               |  |                |      |

■ 남동구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서

우리 구에서 결정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                   |             |                   |                           |  |
|-------------------|-------------|-------------------|---------------------------|--|
| 보상금<br>신청<br>접수번호 |             |                   |                           |  |
| 보상금<br>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남/여)                 |  |
|                   | 주    소      |                   |                           |  |
| 지급결정 사항           | 결정일자        | 20    년    월    일 |                           |  |
|                   | 결정내용        |                   |                           |  |
|                   | 지    급    액 | 금                 | 원정(₩                    ) |  |

남동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상위법인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사항(2022.7.5. 시행 예정) 및 관련 조례인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2021.7.2.) 반영

### □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남동구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사항 반영
  -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감면 근거 마련(안 제13조제1항)
  - 권익위 책임감면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및 구제절차 안내 규정 마련(안 제13조제2항, 제14조)
-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 1) - 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준용 규정(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2) - 신고보상금 지급관련 기록관리 규정(안 제17조제3항)
- 별지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제10호서식)

남동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2년 5월 12일

남동구 예규 제88호

### 남동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남동구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
2.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2년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자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및 개발 업무 중 구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7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 신고)** ①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9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지침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1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

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2조(징계양정 기준)** 구청장이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제6조 관련)

| 연번 | 부동산<br>개발업무      | 근거 법률                             | 조항   | 공공기관의 역할                         |
|----|------------------|-----------------------------------|------|----------------------------------|
| 1  | 개발제한<br>구역 해제    | 「개발제한구역의<br>지정 및 관리에<br>관한 특별조치법」 | 제3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
|    |                  |                                   | 제4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br>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    |                  |                                   | 제8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br>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 2  | 경제자유구역<br>개발사업   | 「경제자유구역의<br>지정 및 운영에<br>관한 특별법」   | 제4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    |                  |                                   | 제9조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br>실시계획의 작성          |
|    |                  |                                   |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br>실시계획의 승인          |
| 3  | 공공주택사업           | 「공공주택 특별법」                        | 제6조  | 공공주택 지구의 지정                      |
|    |                  |                                   | 제16조 |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
|    |                  |                                   | 제17조 | 지구계획의 승인                         |
| 4  | 공항시설<br>개발사업     | 「공항시설법」                           | 제7조  |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br>실시계획의 수립    |
|    |                  |                                   |      |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br>실시계획의 승인    |
| 5  | 관광지<br>조성사업      | 「관광진흥법」                           | 제52조 | 관광지의 지정                          |
|    |                  |                                   | 제54조 | 관광지조성계획의 수립                      |
|    |                  |                                   |      |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                      |
| 6  | 국방·군사시설사<br>업    | 「국방·군사시설<br>사업에 관한 법률」            | 제4조  |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작성                  |
|    |                  |                                   |      |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
| 7  | 도시·군관리계획<br>의 결정 | 「국토의 계획 및<br>이용에 관한 법률」           | 제24조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    |                  |                                   | 제29조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    |                  |                                   | 제88조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br>실시계획의 작성       |
|    |                  |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br>실시계획의 인가       |
| 8  | 기업도시개발사          | 「기업도시개발                           | 제4조  |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

| 연번 | 부동산<br>개발업무                   | 근거 법률                         | 조항      | 공공기관의 역할                   |
|----|-------------------------------|-------------------------------|---------|----------------------------|
|    | 업                             | 특별법」                          | 제5조     | 개발구역의 지정                   |
|    |                               |                               | 제12조    |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br>실시계획의 작성   |
|    |                               |                               |         |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br>실시계획의 작성   |
| 9  | 마을정비구역에서<br>의<br>농어촌<br>정비사업  | 「농어촌정비법」                      | 제101조   |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              |
|    |                               |                               |         |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
|    |                               |                               | 제103조   |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
| 10 |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 제3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    |                               |                               | 제17조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
|    |                               |                               |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
| 11 | 도시재정비<br>촉진사업                 | 「도시재정비<br>촉진을 위한<br>특별법」      | 제5조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    |                               |                               | 제9조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
|    |                               |                               | 제15조    |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
| 12 |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br>정비법」            | 제8조     | 정비구역의 지정                   |
|    |                               |                               | 제9조     | 정비계획의 입안                   |
|    |                               |                               | 제50조    | 사업시행계획 인가                  |
|    |                               |                               | 제52조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    |                               |                               | 제101조의3 | 정비구역 지정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
|    |                               |                               |         |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정비구역<br>지정 신청   |
|    |                               |                               |         |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의<br>정비계획 수립 제안 |
| 13 | 혁신지구재생사<br>업                  | 「도시재생 활성화<br>및 지원에 관한<br>특별법」 | 제41조    | 혁신지구의 지정                   |
|    |                               |                               |         | 혁신지구계획의 승인                 |
|    |                               |                               | 제46조    |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
|    |                               |                               |         |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
| 14 | 문화산업단지<br>및<br>문화산업진흥지<br>구조성 | 「문화산업진흥<br>기본법」               | 제25조    |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신청              |
|    |                               |                               |         |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

| 연번 | 부동산<br>개발업무           | 근거 법률                         | 조항     | 공공기관의 역할                   |
|----|-----------------------|-------------------------------|--------|----------------------------|
|    |                       |                               |        |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
|    |                       |                               | 제28조의2 |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
| 15 | 물류단지개발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br>및 운영에 관한<br>법률」  | 제22조   |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
|    |                       |                               | 제22조의2 |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
|    |                       |                               | 제28조   |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수립             |
|    |                       |                               |        |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16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 「민간임대주택에<br>관한 특별법」           | 제22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br>공급촉진지구의 지정   |
|    |                       |                               | 제28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br>공급촉진지구계획의 작성 |
|    |                       |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br>공급촉진지구계획의 승인 |
| 17 | 빈집 및<br>소규모주택<br>정비사업 | 「빈집 및<br>소규모주택 정비에<br>관한 특별법」 | 제12조   |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
|    |                       |                               | 제13조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    |                       |                               | 제29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
|    |                       |                               | 제30조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 18 | 산업단지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br>개발에 관한 법률」         | 제6조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
|    |                       |                               | 제7조    |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
|    |                       |                               | 제7조의2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    |                       |                               | 제8조    | 농공단지의 지정                   |
|    |                       |                               | 제8조의3  | 준산업단지의 지정                  |
|    |                       |                               | 제17조   |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
|    |                       |                               |        |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                       |                               | 제18조   |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
|    |                       |                               |        |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                       |                               | 제18조의2 |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
|    |                       |                               |        |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                       |                               | 제19조   |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

| 연번 | 부동산<br>개발업무    | 근거 법률                         | 조항     | 공공기관의 역할                         |
|----|----------------|-------------------------------|--------|----------------------------------|
|    |                |                               |        |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                |                               | 제40조의2 |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
| 19 | 역세권개발<br>사업    | 「역세권의 개발 및<br>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조    |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
|    |                |                               | 제13조   |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
|    |                |                               |        |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 20 | 연구개발특구개<br>발사업 | 「연구개발특구의<br>육성에 관한<br>특별법」    | 제4조    |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
|    |                |                               | 제27조   |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br>작성           |
|    |                |                               |        |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br>승인           |
| 21 | 온천개발사업         | 「온천법」                         | 제5조    |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
|    |                |                               | 제10조   |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
|    |                |                               |        |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
| 22 | 시장정비사업         | 「전통시장 및<br>상점가 육성을<br>위한 특별법」 | 제33조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br>승인에 대한 추천 신청 |
|    |                |                               | 제35조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
|    |                |                               | 제37조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
| 23 | 주택건설사업         | 「주택법」                         | 제15조   |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br>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
| 24 | 로봇랜드<br>조성사업   | 「지능형 로봇 개발<br>및 보급 촉진법」       | 제30조   |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신청                    |
|    |                |                               |        |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
|    |                |                               | 제31조   |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작성                  |
|    |                |                               |        |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
| 25 | 지역개발사업         | 「지역개발 및<br>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조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
|    |                |                               | 제22조   |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
|    |                |                               | 제23조   |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    |                |                               | 제45조   |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

| 연번 | 부동산<br>개발업무  | 근거 법률                           | 조항              | 공공기관의 역할                             |
|----|--------------|---------------------------------|-----------------|--------------------------------------|
| 26 | 친수구역<br>조성사업 | 「친수구역 활용에<br>관한 특별법」            | 제4조             | 친수구역의 지정                             |
|    |              |                                 | 제13조            |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
|    |              |                                 |                 |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 27 | 택지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 제3조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
|    |              |                                 | 제9조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
|    |              |                                 |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 28 | 항만재개발<br>사업  | 「항만 재개발 및<br>주변지역 발전에<br>관한 법률」 | 제12조            |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의 지정                       |
|    |              |                                 | 제17조            |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
|    |              |                                 |                 |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 29 | 혁신도시개발사<br>업 | 「혁신도시 조성 및<br>발전에 관한<br>특별법」    | 제6조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
|    |              |                                 | 제11조            |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작성                        |
|    |              |                                 |                 |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
| 30 | 예비타당성 조사     | 「국가재정법」                         | 제8조의2<br>제1항제2호 | 예비타당성조사<br>※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 |
| 31 | 예비타당성 조사     | 「공공기관의<br>운영에 관한 법률」            | 제40조<br>제3항     | 예비타당성조사<br>※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 |

[별표 2]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2조 관련)

| 비위의 정도 및<br>과실 여부<br><br>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br>심하고 고의가<br>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br>심하고<br>중과실이거나,<br>비위의 정도가<br>약하고 고의가<br>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br>심하고<br>경과실이거나,<br>비위의 정도가<br>약하고 중과실인<br>경우 | 비위의 정도가<br>약하고 경과실인<br>경우 | 참고 기준                                                              |
|-------------------------------------------------------------------------------------------------------------------------------------------------------------------------------------------------------|-----------------------------|----------------------------------------------------------|--------------------------------------------------------|---------------------------|--------------------------------------------------------------------|
| 법 제5조, 제6조, 제8조,<br>제9조, 제15조에 따른<br>신고신창제출 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공무원 징계령<br>시행규칙」<br>별표1 1호 하목<br><br>「지방공무원<br>징계규칙」<br>별표1 1호 하목 |
| 법 제10조, 제11조, 제<br>12조, 제13조에 따른 제<br>한금지 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br>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br>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br>(감봉-견책*)         | 「공무원 징계령<br>시행규칙」<br>별표1 1호 과목<br>* 「지방공무원<br>징계규칙」<br>별표1 1호 과목   |
| 법 제20조제1항 및 제2<br>항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공무원 징계령<br>시행규칙」<br>별표1 1호 하목<br><br>「지방공무원<br>징계규칙」<br>별표1 1호 하목 |
|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br>준용되는<br>· 「공익신고자 보호법」<br>제12조제1항의 비밀<br>보장 의무 위반<br>· 같은 법 제21조제2<br>항에 따라 확정된 보<br>호조치결정 미이행<br>· 같은 법 제20조의2의 특<br>별보호조치 결정 미이<br>행<br>· 같은 법 제19조제2항<br>제3항을 위반하여 자<br>료제출 등 거부행위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                                                                                                         |  |                             |  |
|---------------------------------------------------------------------------------------------------------|--|-----------------------------|--|
| ■ 남동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  |
|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해임, 견책, 표창<br>• 해당 공직자( )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br>(앞 쪽) |  | <b>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b>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

|        |         |    |        |
|--------|---------|----|--------|
| 신고·신청인 | 성명      | 소속 | 직위(직급) |
|        | ① 담당 업무 |    |        |

|                     |                                                                                                                                                                                                                                         |            |                                    |
|---------------------|-----------------------------------------------------------------------------------------------------------------------------------------------------------------------------------------------------------------------------------------|------------|------------------------------------|
| 직무관련자<br>(사적 이해관계자) | 성명                                                                                                                                                                                                                                      | 소속         | [ ] 개인 [ ] 법인<br>[ ] 단체 [ ]<br>공직자 |
|                     | 연락처                                                                                                                                                                                                                                     | ② 사적 이해 관계 |                                    |
|                     | ③ 관련 직무                                                                                                                                                                                                                                 |            |                                    |
|                     | ④ 직무관련자<br><br>[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br>[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br>[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br>[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                                    |

|      |  |
|------|--|
| 참고자료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방법

-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사적이해관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지침을 포함)·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①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②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지침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③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지침, 대법원지침, 헌법재판소지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침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획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④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

|     |    |     |                                 |
|-----|----|-----|---------------------------------|
| 신청인 | 성명 | 소속  | [ ] 개인 [ ] 법인<br>[ ] 단체 [ ] 공직자 |
|     | 주소 | 연락처 |                                 |

|              |                                                              |    |        |
|--------------|--------------------------------------------------------------|----|--------|
| 업무 담당<br>공직자 | 성명                                                           | 소속 | 직위(직급) |
|              | ① 관련 직무                                                      |    |        |
|              |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br>[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    |        |

|         |                                                                                                           |
|---------|-----------------------------------------------------------------------------------------------------------|
| 기피 신청사유 |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br>[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br>[ ] 기타( ) |
|         |                                                                                                           |

|      |  |
|------|--|
| 참고자료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지침, 대법원지침, 헌법재판소지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침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획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②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        |  |
|--------|--|
| 성 명    |  |
| 소 속    |  |
| 직위(직급) |  |
| 관련 직무  |  |
| 의 건    |  |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통보일 |
|------|-----|-----|
|------|-----|-----|

| 신고·신청인 | 성명 | 소속 | 신고·신청일 |
|--------|----|----|--------|
|--------|----|----|--------|

|      |                                                                     |    |        |
|------|---------------------------------------------------------------------|----|--------|
| 조치대상 | [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
|      | [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    |        |
|      | 성명                                                                  | 소속 | 직위(직급) |
|      | ① 관련 직무                                                             |    |        |

|      |                                                                                                                                       |  |  |
|------|---------------------------------------------------------------------------------------------------------------------------------------|--|--|
| 조치결과 |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br>[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  |
|      |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br>「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br>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  |

|            |  |
|------------|--|
| 기타<br>참고사항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지침, 대법원지침, 헌법재판소지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침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획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

|     |         |    |        |
|-----|---------|----|--------|
| 신청인 | 성명      | 소속 | 직위(직급) |
|     | ① 담당 업무 |    |        |

|       |                                                                                                                                                                                                                                     |    |     |
|-------|-------------------------------------------------------------------------------------------------------------------------------------------------------------------------------------------------------------------------------------|----|-----|
| 직무관련자 | 성명                                                                                                                                                                                                                                  | 소속 | 연락처 |
|       | ② 관련 직무                                                                                                                                                                                                                             |    |     |
|       | ③ 직무관련자<br>[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br>[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br>[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br>[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     |

|               |                                                               |
|---------------|---------------------------------------------------------------|
| 신청하는 조치<br>유형 |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br>[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

|       |  |
|-------|--|
| 신청 사유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채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지침, 대법원지침, 헌법재판소지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침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③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 및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
|------|-----|-----|

|     |                  |    |        |
|-----|------------------|----|--------|
| 신고인 | 성명               | 소속 | 직위(직급) |
|     | 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 |    |        |

|                         |    |                                                                                  |
|-------------------------|----|----------------------------------------------------------------------------------|
| 부동산<br>[ ]보유자<br>[ ]매수자 | 성명 | 신고인과의 관계<br>[ ] 본인 [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br>[ ] 배우자 [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                         | 주소 |                                                                                  |

|                                        |  |
|----------------------------------------|--|
| ① 보유·매수한<br>부동산 관련<br>소속기관의<br>업무(사업명) |  |
|----------------------------------------|--|

|     |                                                                                                                                                                                                                                                     |    |         |
|-----|-----------------------------------------------------------------------------------------------------------------------------------------------------------------------------------------------------------------------------------------------------|----|---------|
| 부동산 | 유형<br>[    ] 토지 (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input type="checkbox"/> 지상권 <input type="checkbox"/> 전세권 <input type="checkbox"/> 분양권 )<br>[    ] 건물 (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input type="checkbox"/> 전세(임차)권 <input type="checkbox"/> 분양권 ) |    | 취득(예정)일 |
|     | 소재지                                                                                                                                                                                                                                                 |    |         |
|     | 지번                                                                                                                                                                                                                                                  | 지목 | 면적(㎡)   |

|      |  |
|------|--|
| 참고자료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     |        |     |
|-----|--------|-----|
| 제출인 | 성명     | 소속  |
|     | 직위(직급) | 임용일 |

###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 근무기간 | 명칭(소재지) | 직위(직급) | 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
|      |         |        |         |

### 대리, 고문·자문 등

| 활동기간 | 기관명(소재지) | 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          |         |

###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 근무기간 | 업체명(소재지) | 직위(직급) | 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
|      |          |        |         |

### 기타

| 근무기간 | 근무처(소재지) | 직위(직급) | 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
|      |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남동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

|     |    |    |        |
|-----|----|----|--------|
| 신고인 | 성명 | 소속 | 직위(직급) |
|-----|----|----|--------|

|     |     |                                                                                          |
|-----|-----|------------------------------------------------------------------------------------------|
| 거래자 | 성명  | 신고인과의 관계<br>[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br>[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br>[ ] ① 특수관계사업자 |
|     | 연락처 |                                                                                          |
|     |     |                                                                                          |

|       |                                                                                                                                                                                                                                                            |    |     |                                 |
|-------|------------------------------------------------------------------------------------------------------------------------------------------------------------------------------------------------------------------------------------------------------------|----|-----|---------------------------------|
| 거래상대방 | 성명                                                                                                                                                                                                                                                         | 소속 | 연락처 | [ ] 개인 [ ] 법인<br>[ ] 단체 [ ] 공직자 |
|       | ② 직무관련자                                                                                                                                                                                                                                                    |    |     |                                 |
|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br>[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br>[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br>[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br>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    |     |                                 |

|       |                                                            |
|-------|------------------------------------------------------------|
| 거래상대방 | ② 직무관련자                                                    |
|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       |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

|      |  |
|------|--|
| 참고자료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②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      |      |          |
|------|------|------|----------|
| 채용기관 | 기관명  | 채용방법 | 채용직위(직급) |
|      | 채용사유 |      |          |

|                |     |      |        |
|----------------|-----|------|--------|
| 채용대상자<br>(확인인) | 성명  | 주소   |        |
|                | 연락처 | 생년월일 | 채용 예정일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                                                                                                      |                           |
|---------------|------------------------------------------------------------------------------------------------------|---------------------------|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② 예외<br>해당 여부 |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         |      |                                |
|-----|---------|------|--------------------------------|
| 발주자 | 발주기관    | 발주부서 |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      | [ ] 공사 [ ] 용역<br>[ ] 물품 [ ] 기타 |
|     | 수의계약 사유 |      |                                |

|                |     |    |                                |
|----------------|-----|----|--------------------------------|
| 계약상대자<br>(확인인) | 성명  | 소속 | [ ] 개인 [ ] 법인<br>[ ] 단체 [ ] 기타 |
|                | 연락처 | 주소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                           |
|---|--------------------------------------------------------------------------------------------------------------------------------------------------------------------------------------------------|---------------------------|
| ①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③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④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⑤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⑥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⑦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⑧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 신고인            | 성명                                                                                                                                                                                                                                                                  | 소속         |
|                |                                                                                                                                                                                                                                                                     | 직위(직급)     |
| 직무관련자<br>(퇴직자) | 성명                                                                                                                                                                                                                                                                  | 연락처        |
|                | 현 소속 기관                                                                                                                                                                                                                                                             | 퇴직 전 소속 기관 |
|                | ① 직무관련자<br>[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br>[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br>[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br>[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br>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            |
|                |                                                                                                                                                                                                                                                                     |            |
| 접촉 사항          | 일시                                                                                                                                                                                                                                                                  | 사유         |
|                | 유형<br>[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                                                                                                                                                                                                          | 비용부담자      |
| 참고자료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

|     |                                                       |     |        |
|-----|-------------------------------------------------------|-----|--------|
| 신고자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주소  |        |
|     |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     |        |

|                   |                                     |        |     |
|-------------------|-------------------------------------|--------|-----|
| 법 위반행위자<br>(피신고자) | [ ] 개인                              |        |     |
|                   | 성명                                  | 연락처    | 직업  |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     |
|                   | 성명                                  | 연락처    | 직업  |
|                   | 명칭(법인 또는 단체)                        | 소재지    |     |
|                   |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        |     |
|                   | 성명                                  | 연락처    | 직업  |
|                   |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 대표자 성명 | 소재지 |

|            |           |    |
|------------|-----------|----|
| 위반행위<br>신고 | 신고경위 및 이유 |    |
|            | 일시        | 내용 |
|            | 장소        |    |

|      |  |
|------|--|
| 증거자료 |  |
|------|--|

위와 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 신고자             | 성명                                                                                     |      | 연락처       |                              | 주민등록번호   |
|                 | 신고기관                                                                                   |      |           |                              |          |
|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br>[ ] 국민권익위원회                            |      |           |                              |          |
|                 |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신분공개 동의 여부<br>[ ] 동의 [ ] 비동의 |          |
|                 | 이첩·송부 일자                                                                               |      | 이첩·송부 내용  |                              |          |
| 위반행위<br>신고사항    | 피신고자 성명                                                                                |      | 피신고자 소속기관 |                              | 피신고자 연락처 |
|                 | 신고내용                                                                                   |      |           |                              |          |
| 조사기관 및<br>조사 결과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      |           |                              |          |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                              |          |
|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                              |          |
|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           |                              |          |
|                 |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           |                              |          |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br>[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                              |          |
| 조사기관 및<br>조사 결과 | [ ] 수사기관 ( )                                                                           |      |           |                              |          |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br>[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                              |          |
| 조사 결과의<br>처리이유  |                                                                                        |      |           |                              |          |
| 기타 사항           |                                                                                        |      |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조사기관 남동구청장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 신고인          | 성명                                                                                                                                                                   | 연락처  |           | 주민등록번호                                                                 |          |
|              | 신고기관                                                                                                                                                                 |      |           |                                                                        |          |
|              | <input type="checkbox"/>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감독기관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input type="checkbox"/> 감사원<br><input type="checkbox"/> 국민권익위원회 |      |           |                                                                        |          |
|              |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신분공개 동의 여부<br><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          |
|              | 이첩·송부 일자                                                                                                                                                             |      | 이첩·송부 내용  |                                                                        |          |
| 위반행위<br>신고사항 | 피신고자 성명                                                                                                                                                              |      | 피신고자 소속기관 |                                                                        | 피신고자 연락처 |
|              | 신고내용                                                                                                                                                                 |      |           |                                                                        |          |
| 종결처리         | 조사기관                                                                                                                                                                 |      |           |                                                                        |          |
|              | <input type="checkbox"/>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감독기관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input type="checkbox"/> 감사원                                     |      |           |                                                                        |          |
|              | 종결사유                                                                                                                                                                 |      |           |                                                                        |          |
|              | <input type="checkbox"/>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                                                                        |          |
|              | <input type="checkbox"/>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input type="checkbox"/>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                                                                        |          |
|              | <input type="checkbox"/>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                                                                        |          |
| 기타 사항        | <input type="checkbox"/>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                                                                        |          |
|              |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           |                                                                        |          |
|              |                                                                                                                                                                      |      |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남동구청장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      |          |        |
|-----------------|------|----------|--------|
| 신고인<br>(이의신청인)  | 성명   |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주소       |        |
| 위반행위자<br>(피신고인) | 성명   | 직업(소속기관) | 연락처    |
| 신고사항            | 일시   | 장소       |        |
|                 | 신고내용 |          |        |
| 통보받은<br>조치사항    | 통보기관 |          | 통보일    |
|                 | 조치내용 |          |        |
| 이의신청 경위<br>및 이유 |      |          |        |
| 참고자료            |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       |                                                                                                                                                                                                                                                                                                                                                                                                                                                                                                                                   |      |                                                                                                                                              |
|-------|-----------------------------------------------------------------------------------------------------------------------------------------------------------------------------------------------------------------------------------------------------------------------------------------------------------------------------------------------------------------------------------------------------------------------------------------------------------------------------------------------------------------------------------|------|----------------------------------------------------------------------------------------------------------------------------------------------|
| 상담일시  |                                                                                                                                                                                                                                                                                                                                                                                                                                                                                                                                   | 상담방법 |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방문<br><input type="checkbox"/> 기타(                      ) |
| 상담신청인 | 성명                                                                                                                                                                                                                                                                                                                                                                                                                                                                                                                                | 연락처  |                                                                                                                                              |
|       | 직위(직급)                                                                                                                                                                                                                                                                                                                                                                                                                                                                                                                            | 소속   |                                                                                                                                              |
| 상담유형  | <input type="checkbox"/>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br><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input type="checkbox"/> 가족 채용 제한<br><input type="checkbox"/>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의계약 체결 제한<br><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br><input type="checkbox"/>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input type="checkbox"/>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br><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상담내용  |                                                                                                                                                                                                                                                                                                                                                                                                                                                                                                                                   |      |                                                                                                                                              |
| 상담결과  |                                                                                                                                                                                                                                                                                                                                                                                                                                                                                                                                   |      |                                                                                                                                              |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2022. 5. 19.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목적 및 이해충돌방지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제2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안 제3조~제5조)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와 관한 사항 : (안 제6조~제7조)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제11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와 관한 사항 : (안 제12조)
- 신고·신청 처리방법 및 그 밖의 사항 등 : (안 제13조~제22조)

예 규

남동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의 회 의 장



2022년 5월 12일

남동구 예규 제89호

남동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의회사무국장을 말한다.

**제3조(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남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의회의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제4조(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의회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의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4조에 따른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의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의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의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의회 소속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 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의회 소속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의회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수익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의회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익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의회 소속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 신고)** ① 의회 소속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

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의회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의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의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양정 기준)** 의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예규 [별표 1]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 ☐ )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
| 신고·신청인             | 성명                                                                               | 소속                                                                                                                                     |
|                    | 직위(직급)                                                                           |                                                                                                                                        |
|                    | ① 담당 업무                                                                          |                                                                                                                                        |
| 직무관련자<br>(사적이해관계자) | 성명                                                                               | 소속                                                                                                                                     |
|                    |                                                                                  | [ <input type="checkbox"/> ] 개인 [ <input type="checkbox"/> ] 법인<br>[ <input type="checkbox"/> ] 단체 [ <input type="checkbox"/> ]<br>공직자 |
|                    | 연락처                                                                              | ② 사적이해관계                                                                                                                               |
|                    | ③ 관련 직무                                                                          |                                                                                                                                        |
|                    | ④ 직무관련자                                                                          |                                                                                                                                        |
|                    | [ <input type="checkbox"/>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 [ <input type="checkbox"/>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 [ <input type="checkbox"/>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 [ <input type="checkbox"/>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
| 참고자료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0조 관련)**

## 작성방법

-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사적이해관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지침을 포함)·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①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②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지침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③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지침, 대법원지침, 헌법재판소지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침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④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비위의 정도 및<br>과실 여부<br><br>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br>심하고 고의가<br>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br>심하고<br>중과실이거나<br>비위의 정도가<br>약하고 고의가<br>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br>심하고<br>경과실이거나<br>비위의 정도가<br>약하고 중과실인<br>경우 | 비위의 정도가<br>약하고 경과실인<br>경우 | 참고 기준                                                              |
|---------------------------------------------------------------------------------------------------------------------------------------------------------------------------------------------------------|-----------------------------|---------------------------------------------------------|-------------------------------------------------------|---------------------------|--------------------------------------------------------------------|
| 법 제5조, 제6조, 제8조,<br>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br>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공무원 징계령<br>시행규칙」 별<br>표 1호 하목<br><br>「지방공무원<br>징계규칙」 별<br>표 1호 하목 |
| 법 제10조, 제11조, 제<br>12조, 제13조에 따른 제<br>한금지 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br>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br>이용한 부당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br>(감봉-견책*)         | 「공무원 징계령<br>시행규칙」<br>별표 1호 파목<br>* 「지방공무원<br>징계규칙」 별<br>표 1호 파목    |
| 법 제20조제1항 및 제2<br>항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공무원 징계령<br>시행규칙」 별<br>표 1호 하목<br><br>「지방공무원<br>징계규칙」 별<br>표 1호 하목 |
|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br>용되는<br>· 「공익신고자 보호법」<br>제12조제1항의 비밀 보<br>장 의무 위반<br>· 같은 법 제21조제2항<br>에 따라 확정된 보호<br>조치결정 미이행<br>· 같은 법 제20조의2의 특<br>별보호조치 결정 미이<br>행<br>·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br>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br>출 등 거부행위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 법 제23조에 해당하는<br>비밀 누설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
|      |     |     |

|     |    |    |     |                                 |
|-----|----|----|-----|---------------------------------|
| 신청인 | 성명 | 소속 |     | [ ] 개인 [ ] 법인<br>[ ] 단체 [ ] 공직자 |
|     | 주소 |    | 연락처 |                                 |

|              |                                                       |    |        |
|--------------|-------------------------------------------------------|----|--------|
| 업무 담당<br>공직자 | 성명                                                    | 소속 | 직위(직급) |
|              | ① 관련 직무                                               |    |        |
|              |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
|              |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    |        |

|         |                                                                                                                                                                          |
|---------|--------------------------------------------------------------------------------------------------------------------------------------------------------------------------|
| 기피 신청사유 | <input type="checkbox"/>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br><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br><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
|------|--|
| 참고자료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이  
한  
지

남동구의회의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지침, 대법원지침, 헌법재판소지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침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②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        |  |
|--------|--|
| 성 명    |  |
| 소 속    |  |
| 직위(직급) |  |
| 관련 직무  |  |
| 의 견    |  |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통보일    |
| 신고·신청인     | 성명                                                                                                                                    | 소속     |
|            |                                                                                                                                       | 신고·신청일 |
| 조치대상       | [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            | [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        |
|            | 성명                                                                                                                                    | 소속     |
|            | 직위(직급)                                                                                                                                |        |
|            | ① 관련 직무                                                                                                                               |        |
| 조치결과       |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br>[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
|            |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br>「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br>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
| 기타<br>참고사항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의회의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지침, 대법원지침, 헌법재판소지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침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

|     |         |    |        |
|-----|---------|----|--------|
| 신청인 | 성명      | 소속 | 직위(직급) |
|     | ① 담당 업무 |    |        |

|       |                                                                                                                                                                                                                                     |    |     |
|-------|-------------------------------------------------------------------------------------------------------------------------------------------------------------------------------------------------------------------------------------|----|-----|
| 직무관련자 | 성명                                                                                                                                                                                                                                  | 소속 | 연락처 |
|       | ② 관련 직무                                                                                                                                                                                                                             |    |     |
|       | ③ 직무관련자<br>[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br>[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br>[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br>[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     |

|               |                                                               |
|---------------|---------------------------------------------------------------|
| 신청하는 조치<br>유형 |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br>[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

|       |  |
|-------|--|
| 신청 사유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채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지침, 대법원지침, 헌법재판소지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침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③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     |        |     |
|-----|--------|-----|
| 제출인 | 성명     | 소속  |
|     | 직위(직급) | 임용일 |

###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 근무기간 | 명칭(소재지) | 직위(직급) | 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
|      |         |        |         |

### 대리, 고문·자문 등

| 활동기간 | 기관명(소재지) | 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          |         |

###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 근무기간 | 업체명(소재지) | 직위(직급) | 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
|      |          |        |         |

### 기타

| 근무기간 | 근무처(소재지) | 직위(직급) | 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
|      |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남동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7호서식]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

|     |    |    |        |
|-----|----|----|--------|
| 신고인 | 성명 | 소속 | 직위(직급) |
|-----|----|----|--------|

|     |     |                                |  |
|-----|-----|--------------------------------|--|
| 거래자 | 성명  | 신고인과의 관계                       |  |
|     | 연락처 |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     |     |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     |     | [ ] ① 특수관계사업자                  |  |

|       |         |    |     |                |
|-------|---------|----|-----|----------------|
| 거래상대방 | 성명      | 소속 | 연락처 | [ ] 개인 [ ] 법인  |
|       |         |    |     | [ ] 단체 [ ] 공직자 |
|       | ② 직무관련자 |    |     |                |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      |                                                                          |  |      |  |
|------|--------------------------------------------------------------------------|--|------|--|
| 거래내용 |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    ] 유가증권 거래                   |  |      |  |
|      | 계약체결일                                                                    |  | 상환기일 |  |
|      | 거래금액(이율)                                                                 |  | 거래원인 |  |
|      | [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 기타 재산상 거래                           |  |      |  |
|      | 계약체결일                                                                    |  | 거래대상 |  |
|      | 거래금액                                                                     |  | 거래원인 |  |
|      |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    ] 기타 계약 |  |      |  |
|      | 계약체결일                                                                    |  | 계약사항 |  |
|      | 거래금액                                                                     |  | 거래원인 |  |
|      |                                                                          |  |      |  |

|      |  |
|------|--|
| 참고자료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②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      |      |          |
|------|------|------|----------|
| 채용기관 | 기관명  | 채용방법 | 채용직위(직급) |
|      | 채용사유 |      |          |

|                |     |      |        |
|----------------|-----|------|--------|
| 채용대상자<br>(확인인) | 성명  | 주소   |        |
|                | 연락처 | 생년월일 | 채용 예정일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                                                                                                      |                           |
|---------------|------------------------------------------------------------------------------------------------------|---------------------------|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② 예외<br>해당 여부 |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         |      |                                |
|-----|---------|------|--------------------------------|
| 발주자 | 발주기관    | 발주부서 |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      | [ ] 공사 [ ] 용역<br>[ ] 물품 [ ] 기타 |
|     | 수의계약 사유 |      |                                |

|                |     |    |                                |
|----------------|-----|----|--------------------------------|
| 계약상대자<br>(확인인) | 성명  | 소속 | [ ] 개인 [ ] 법인<br>[ ] 단체 [ ] 기타 |
|                | 연락처 | 주소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                           |
|---|--------------------------------------------------------------------------------------------------------------------------------------------------------------------------------------------------|---------------------------|
| ①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③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④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⑤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⑥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⑦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⑧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계약상대자(확인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 신고인            | 성명                                                                                                                                                                                                                                                                  | 소속                          |
|                | 성명                                                                                                                                                                                                                                                                  | 연락처                         |
|                | 현 소속 기관                                                                                                                                                                                                                                                             | 퇴직 전 소속 기관                  |
| 직무관련자<br>(퇴직자) | ① 직무관련자<br>[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br>[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br>[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br>[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br>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                             |
| 접촉 사항          | 일시                                                                                                                                                                                                                                                                  | 사유                          |
|                | 유형                                                                                                                                                                                                                                                                  | 비용부담자                       |
|                |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                                                                                                                                                                                                                                            |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 |
| 참고자료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

|     |                                                       |     |        |
|-----|-------------------------------------------------------|-----|--------|
| 신고자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주소  |        |
|     |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     |        |

|                   |                                     |        |     |
|-------------------|-------------------------------------|--------|-----|
| 법 위반행위자<br>(피신고자) | [ ] 개인                              |        |     |
|                   | 성명                                  | 연락처    | 직업  |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     |
|                   | 성명                                  | 연락처    | 직업  |
|                   | 명칭(법인 또는 단체)                        | 소재지    |     |
|                   |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        |     |
|                   | 성명                                  | 연락처    | 직업  |
|                   |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 대표자 성명 | 소재지 |

|            |           |    |
|------------|-----------|----|
| 위반행위<br>신고 | 신고경위 및 이유 |    |
|            | 일시        | 내용 |
|            | 장소        |    |

|      |  |
|------|--|
| 증거자료 |  |
|------|--|

위와 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의회의장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sqrt{\quad}$  표시를 합니다.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 신고자  | 성명                                                                                                                                                                           |      | 연락처      |      | 주민등록번호                                                                 |
|      | 신고기관<br><input type="checkbox"/>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감독기관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input type="checkbox"/> 감사원<br><input type="checkbox"/> 국민권익위원회 |      |          |      |                                                                        |
|      |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신분공개 동의 여부<br><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
|      | 이첩·송부 일자                                                                                                                                                                     |      | 이첩·송부 내용 |      |                                                                        |
|      |                                                                                                                                                                              |      |          |      |                                                                        |

|              |         |           |          |
|--------------|---------|-----------|----------|
| 위반행위<br>신고사항 | 피신고자 성명 | 피신고자 소속기관 | 피신고자 연락처 |
|              | 신고내용    |           |          |

|                 |                                               |
|-----------------|-----------------------------------------------|
| 조사기관 및<br>조사 결과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                 |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 [ ] 수사기관 ( )                                  |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  |
|----------------|--|
| 조사 결과의<br>처리이유 |  |
|----------------|--|

|       |  |
|-------|--|
| 기타 사항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이  
한  
도

조사기관 남동구의회의장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성명           |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
| 신고기관         | <input type="checkbox"/>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감독기관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input type="checkbox"/> 감사원<br><input type="checkbox"/> 국민권익위원회                                                                                                                                                                                                                                                                                                                               |                                                                        |
|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분공개 동의 여부<br><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
| 이첩·송부 일자     | 이첩·송부 내용                                                                                                                                                                                                                                                                                                                                                                                                                                                                                           |                                                                        |
| 위반행위<br>신고사항 | 피신고자 성명                                                                                                                                                                                                                                                                                                                                                                                                                                                                                            | 피신고자 소속기관                                                              |
|              | 피신고자 연락처                                                                                                                                                                                                                                                                                                                                                                                                                                                                                           |                                                                        |
|              | 신고내용                                                                                                                                                                                                                                                                                                                                                                                                                                                                                               |                                                                        |
| 조사기관         | <input type="checkbox"/>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감독기관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input type="checkbox"/> 감사원                                                                                                                                                                                                                                                                                                                                                                   |                                                                        |
| 종결사유         | <input type="checkbox"/>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br><input type="checkbox"/>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br><input type="checkbox"/>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br><input type="checkbox"/>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br><input type="checkbox"/>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br><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
| 기타 사항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남동구의회의장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      |          |        |
|-----------------|------|----------|--------|
| 신고인<br>(이의신청인)  | 성명   |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주소       |        |
| 위반행위자<br>(피신고인) | 성명   | 직업(소속기관) | 연락처    |
|                 | 일시   | 장소       |        |
| 신고사항            | 신고내용 |          |        |
|                 |      |          |        |
| 통보받은<br>조치사항    | 통보기관 |          | 통보일    |
|                 | 조치내용 |          |        |
| 이의신청 경위<br>및 이유 |      |          |        |
|                 |      |          |        |
| 참고자료            |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       |                                                                                                                                                                                                                                                                                                                                                                                                                                                                              |      |                                     |
|-------|------------------------------------------------------------------------------------------------------------------------------------------------------------------------------------------------------------------------------------------------------------------------------------------------------------------------------------------------------------------------------------------------------------------------------------------------------------------------------|------|-------------------------------------|
| 상담일시  |                                                                                                                                                                                                                                                                                                                                                                                                                                                                              | 상담방법 | [ ] 전자우편 [ ] 전화 [ ] 방문<br>[ ] 기타( ) |
| 상담신청인 | 성명                                                                                                                                                                                                                                                                                                                                                                                                                                                                           | 연락처  |                                     |
|       | 직위(직급)                                                                                                                                                                                                                                                                                                                                                                                                                                                                       | 소속   |                                     |
| 상담유형  | <input type="checkbox"/>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br><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input type="checkbox"/> 가족 채용 제한<br><input type="checkbox"/>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의계약 체결 제한<br><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br><input type="checkbox"/>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input type="checkbox"/>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br><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상담내용  |                                                                                                                                                                                                                                                                                                                                                                                                                                                                              |      |                                     |
| 상담결과  |                                                                                                                                                                                                                                                                                                                                                                                                                                                                              |      |                                     |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2022. 5. 19.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목적 및 이해충돌방지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안 제3조~제5조)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제9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와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신고·신청 처리방법 및 그 밖의 사항 등: (안 제11조~제20조)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951호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6일

## 남 동 구 청 장

###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인 행정안전부 예규(2019. 5. 9.개정) 및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등 탈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실천의지를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안부 예규) 개정 내용 반영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기본 및 자율 항목 배점 개정 (별표 1호, 2호)
- 금고지정 평가시 배점기준 신설
  - 탈탄소 사회전환을 위한 평가항목으로 “탄소중립 기여도”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세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1층 세무과 (만수동, 남동구청)
- 연락처: ☎ 453-2362, FAX 453-236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http://www.namdong.go.kr)/입법예고)

#### 4. 개정조례(안):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2개월”를 “약정기간 만료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1개월”를 “약정기간 만료 30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남동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제2항 관련)

| 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비고 |
|----------------------------------------------------------------------------|--------------------------------------------------------------------------------------------------------------|------|----|
| 계                                                                          |                                                                                                              | 100  |    |
| 1. 금융기관의 대<br>내외적 신용도<br>및 재무구조의<br>안정성                                    | 소계                                                                                                           | 27   |    |
|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8)  |    |
|                                                                            | - 국외 평가기관(4점)                                                                                                | (4)  |    |
|                                                                            | - 국내 평가기관(4점)                                                                                                | (4)  |    |
|                                                                            |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    |
|                                                                            |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19) |    |
|                                                                            | - 총자본비율 (안전성, 6점)                                                                                            | (6)  |    |
|                                                                            |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6점)로 평가                                                                              |      |    |
|                                                                            |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6)  |    |
|                                                                            |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5)  |    |
|                                                                            | - 대손충당금 적립율(건전성, 2점)                                                                                         | (2)  |    |
|                                                                            |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    |
|                                                                            |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      |    |
| 2. 구에 대한 대출<br>및 예금금리                                                      | 소계                                                                                                           | 21   |    |
|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7)  |    |
|                                                                            |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 (6)  |    |
|                                                                            |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 (4)  |    |
|                                                                            | 라.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                                                                                         | (2)  |    |
|                                                                            | 마.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 (2)  |    |
| 3. 구민 이용의<br>편의성                                                           | 소계                                                                                                           | 19   |    |
|                                                                            | 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 (5)  |    |
|                                                                            | 나.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7)  |    |
|                                                                            | ※ 금고 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      |    |
|                                                                            |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7)  |    |
| 4. 금고업무<br>관리능력                                                            | 소계                                                                                                           | 24   |    |
|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 (6)  |    |
|                                                                            |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8)  |    |
|                                                                            |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8)  |    |
|                                                                            |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 (2)  |    |
| 5. 지역사회 기여<br>및 구와의 협력                                                     | 소계                                                                                                           | 7    |    |
|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 (5)  |    |
|                                                                            |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 (2)  |    |
|                                                                            |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    |
|                                                                            |                                                                                                              |      |    |
| 6. 기타 사항                                                                   | 소계                                                                                                           | 2    |    |
|                                                                            | 가. 탄소중립 기여도                                                                                                  | (2)  |    |
| ○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br>산·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 비교평가 |                                                                                                              |      |    |

[별표 2]

##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제2항 관련)

### 1. 일반원칙

- 가.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 나.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다.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함
- 라.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셋째 자리는 절사한다.

###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8점)

###### 가)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다만,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가능하다

###### 나)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같은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2)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가)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 나)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1) 총자본비율 (안전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6점)로 평가

###### (2)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3)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4) 대손충당금 적립률 (건전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만점 처리 가능

나.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1점)

1)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보통예금 및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구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 (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 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2점)

○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구민 이용의 편의성 (19점)

1)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점)

○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다만,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 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 (24점)

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2점)

-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마.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7점)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통합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바. 기타 사항 (2점)

1) 탄소중립 기여도 (2점)

-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등),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1조(금고지정 절차)                                                                                                                                                            |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
| ① ~ ② (생략)                                                                                                                                                               | ①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의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인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u>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u>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br>-----<br>-----<br>-----<br>-----<br>-----<br>----- <u>약정기간 만료</u><br><u>60일</u> -----<br>-----. |
|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금융기관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u>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u>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 ④ -----<br>-----<br>-----<br>-- <u>약정기간 만료 30일</u> -----<br>-----.                                         |

| 현행                                               |                                    |     | 개정안                                              |                                                                                                                      |     |
|--------------------------------------------------|------------------------------------|-----|--------------------------------------------------|----------------------------------------------------------------------------------------------------------------------|-----|
| 【별표 1】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br>(제97조제2항 관련)           |                                    |     | 【별표 1】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br>(제97조제2항 관련)           |                                                                                                                      |     |
| 항목                                               | 세부항목                               | 배 점 | 항목                                               | 세부항목                                                                                                                 | 배 점 |
| 계                                                |                                    | 100 | 계                                                |                                                                                                                      | 100 |
| 1.금융 기관<br>의<br>대 내 외 적<br>신용도 및<br>채무구조의<br>안정성 |                                    | 33  | 1.금융 기관<br>의<br>대 내 외 적<br>신용도 및<br>채무구조의<br>안정성 |                                                                                                                      | 27  |
|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10  |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8   |
|                                                  | - 국외 평가기관 (6점)                     | (6) |                                                  | - 국외 평가기관 (4점)                                                                                                       | (4) |
|                                                  | ~(생략)                              | (4) |                                                  | ~(현행과 같음)                                                                                                            |     |
|                                                  |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23  |                                                  |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18  |
|                                                  | - 총자본비율 (안전성, 7점)                  | (7) |                                                  | - 자본비율 (안전성, 6점)                                                                                                     | (6) |
|                                                  | ~(생략)                              |     |                                                  | ~(현행과 같음)                                                                                                            |     |
| 2.구에 대한<br>대출 및<br>예금금리                          |                                    | 18  | 2.구에 대한<br>대출 및<br>예금금리                          |                                                                                                                      | 19  |
|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6) |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7) |
|                                                  |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 (5) |                                                  |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 (6) |
|                                                  | 다.~라.(생략)                          |     |                                                  | 다.~라. (현행과 같음)                                                                                                       |     |
|                                                  | 마.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 (1) |                                                  | 마.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 (2) |
| 3.구 민이용<br>의 편의성                                 |                                    | 18  | 3.구 민이용<br>의 편의성                                 |                                                                                                                      | 19  |
|                                                  | 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 (5) |                                                  | 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 (5) |
|                                                  | 나. 관내 지점의 수 및 구민이용<br>편리성          | (6) |                                                  | 나.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br>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7) |
| 4.금 고 업 무<br>관리능력                                |                                    | 25  | 4.금 고 업 무<br>관리능력                                |                                                                                                                      | 24  |
|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 (5) |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 (6) |
|                                                  |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7) |                                                  |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8) |
|                                                  |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br>능력         | (7) |                                                  |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br>능력                                                                                           | (8) |
|                                                  | 라.수납시스템(OCR센터,ETAX<br>등) 운영능력 및 계획 | (3) |                                                  | 라.수납시스템(OCR센터,ETAX<br>등) 운영능력 및 계획                                                                                   | (2) |
| 5.지역 사회<br>기여 및<br>구 와 의<br>협력사업                 |                                    | 9   | 5.지역 사회<br>기여 및<br>구 와 의<br>협력사업                 |                                                                                                                      | 7   |
|                                                  | 가.~(생략)                            |     |                                                  | 가.~(현행과 같음)                                                                                                          |     |
| 6.<신설>                                           |                                    |     | 6<br>기타사항                                        |                                                                                                                      | 2   |
|                                                  | 가. <신설>                            |     |                                                  | 가. 탄소중립 기여도<br>○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br>부 및 이행 실적, 기후금융 국<br>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1점)<br>○ 금융기관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br>투자한 실적 비교·평가(1점) | (2) |

| 현행                                                                                                                                                                                                                                                                                                                                                                                                                                                                                                                                                                                                                                                                                                                                                                                                                                                                                                                                          | 개정안                                                                                                                                                                                                                                                                                                                                                                                                                                                                                                                                                                                                                                                                                                                                                                                                                                                                                                                                                                                                                                                                                                                                                   |
|---------------------------------------------------------------------------------------------------------------------------------------------------------------------------------------------------------------------------------------------------------------------------------------------------------------------------------------------------------------------------------------------------------------------------------------------------------------------------------------------------------------------------------------------------------------------------------------------------------------------------------------------------------------------------------------------------------------------------------------------------------------------------------------------------------------------------------------------------------------------------------------------------------------------------------------------|-------------------------------------------------------------------------------------------------------------------------------------------------------------------------------------------------------------------------------------------------------------------------------------------------------------------------------------------------------------------------------------------------------------------------------------------------------------------------------------------------------------------------------------------------------------------------------------------------------------------------------------------------------------------------------------------------------------------------------------------------------------------------------------------------------------------------------------------------------------------------------------------------------------------------------------------------------------------------------------------------------------------------------------------------------------------------------------------------------------------------------------------------------|
| <p>【별표 2】<br/>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br/>(제97조제2항 관련)</p> <p>1. 일반원칙<br/>가.~(생략)</p> <p>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br/>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33점)<br/>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10점)<br/>가)~나) (생략)<br/>2) 주요 경영지표 현황 (23점)<br/>가)~(생략)<br/>나)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br/>(1) 총자본비율 (안전성, 7점)<br/>※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7점)로 평가<br/>(2)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br/>(3)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6점)<br/>(4) 대손충당금 적립률(건전성, 3점)<br/>~(생략)<br/>나.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br/>1)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br/>~(생략)<br/>2) 공공예금 적용금리 (5점)<br/>3)~4) (생략)<br/>5)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1점)<br/>다. 구민 이용의 편의성 (18점)<br/>1) 관내 지점의 수 및 구민이용 편리성 (6점)<br/>~(생략)<br/>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점)<br/>3)~(생략)<br/>라.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br/>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br/>~(생략)<br/>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br/>~(생략)<br/>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점)<br/>~(생략)<br/>4) 수납시스템(OCR센터,ETAX등) 운영능력 및 계획 (3점)<br/>~(생략)<br/>마..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9점)<br/>1)~(생략)<br/>2)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4점)<br/>~(생략)<br/>바. &lt;신규&gt;</p> | <p>【별표 2】<br/>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br/>(제97조제2항 관련)</p> <p>1. 일반원칙<br/>가.~(현행과 같음)</p> <p>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br/>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27점)<br/>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8점)<br/>가)~나) (현행과 같음)<br/>2)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br/>가)~(현행과 같음)<br/>나)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br/>(1) 총자본비율 (안전성, 6점)<br/>※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6점)로 평가<br/>(2)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br/>(3)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br/>(4) 대손충당금 적립률(건전성, 2점)<br/>~(현행과 같음)<br/>나.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br/>1)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br/>~(현행과 같음)<br/>2) 공공예금 적용금리 (6점)<br/>3)~4) (현행과 같음)<br/>5)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2점)<br/>다. 구민 이용의 편의성 (19점)<br/>1)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IM 설치대수 (7점)<br/>~(현행과 같음)<br/>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점)<br/>3)~(현행과 같음)<br/>라. 금고업무 관리능력 (24점)<br/>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br/>~(현행과 같음)<br/>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br/>~(현행과 같음)<br/>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br/>~(현행과 같음)<br/>4) 수납시스템(OCR센터,ETAX등) 운영능력 및 계획 (2점)<br/>~(현행과 같음)<br/>마..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7점)<br/>1)~(생략)<br/>2)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br/>~(생략)<br/>바. 기타 사항 (2점)<br/>1) 탄소중립 기여도 (2점)<br/>○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등),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p> |

## 관련 법령

##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                |                                                                                                                                                                                                                                                                                                                                                                                                                                                                                                                                                                                                                                                                                                                                                                                                                                                                             |
|----------------|-----------------------------------------------------------------------------------------------------------------------------------------------------------------------------------------------------------------------------------------------------------------------------------------------------------------------------------------------------------------------------------------------------------------------------------------------------------------------------------------------------------------------------------------------------------------------------------------------------------------------------------------------------------------------------------------------------------------------------------------------------------------------------------------------------------------------------------------------------------------------------|
| 관련 법령          | <p>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li> <li>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li> <li>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li> <li>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li> </ol>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li> <li>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li> <li>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li> <li>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li> </ol>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p> |
| 관련 법령<br>정비 대상 | “해당사항 없음”                                                                                                                                                                                                                                                                                                                                                                                                                                                                                                                                                                                                                                                                                                                                                                                                                                                                   |
| 특이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                                       |
|-------------|---------------------------------------|
| <b>참고 2</b> | <b>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19. 5. 9.개정)</b> |
|-------------|---------------------------------------|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1. 총 칙

## ① 목 적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 ② 용어의 정의

### ①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함

### ② 일반회계(「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

-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함

### ③ 특별회계(「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함

### ④ 기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함

### ⑤ 금고지정

-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 ⑥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

## ③ 적용범위

○ 본 기준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함

○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4 금고의 수

○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

## 5 금고의 약정기간

○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함

# 2. 금고지정 방법

## 1 개 념

○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 및 수의(隨意)방법이 있으며,

-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수의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2 금고지정 방법

○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

가.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 3. 금고지정 평가기준

#### 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 표>의 기준으로 평가함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2)

마.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7)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1)

※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2항 및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제20조 2항에 따른 지방세입금 납부·수납처리를 위한 전자적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

○ <별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가.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 (예시① 참조)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11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예시③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다만, 항목6을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예시② 참조)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예시②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예시①) 항목 6을 정하는 경우

| 지 침         | 조례 또는 규칙안 예시                                                                                                                                                                              |
|-------------|-------------------------------------------------------------------------------------------------------------------------------------------------------------------------------------------|
| 6. 기타사항(11) | 6. 기타사항(11) - 항목<br>가. 지역재투자 실적(3) - 세부항목<br>*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가능<br>나. 주민의견 수렴결과(5) - 세부항목<br>*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금고 지정·운영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 '20년부터 세부 실시방안을 마련하여 반영 가능<br>다. 0000(3) - 세부항목 |

(예시②) 배점하한 및 점수편차(순위간 점수편차 10% 적용시, 항목2는 5%적용)

| 지 침                                                                                                                                                                                                                                                                                                                                                                                                       |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
|-----------------------------------------------------------------------------------------------------------------------------------------------------------------------------------------------------------------------------------------------------------------------------------------------------------------------------------------------------------------------------------------------------------|------------------------------------------------------------------------------------------------------------------------------------------------------------------------------------------------------------------------------------------------------------------------------------------------------------------------------------------------------------------------------------------------------------------------------------------------------------------------------|
|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br>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br>- 국외평가기관(4)<br><br>나. 주요경영지표 현황<br>- 총자본비율(안전성, 6점)<br>※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으로 평가<br>-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br>-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br>* 경영지표 평가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산업별 농수산물조합, 새마을금고 등으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br>*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br>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br>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br>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br>- 국외평가기관(4)<br>(1순위 4.0점, 2순위 3.6점, 최저순위 2.4점)<br>나. 주요경영지표 현황<br>- 총자본비율(안전성, 6점)<br>※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으로 평가<br>-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br>-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br>* 경영지표 평가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산업별 농수산물조합, 새마을금고 등으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br>*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br>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br>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br>(1순위 7.0점, 2순위 6.65점, 최저순위 4.2점) |

(예시③) 항목 6(자치단체 자율항목)의 배점을 타 항목에 배분하는 경우

| 지 침                                                                                                                                                                                                                                                                                                                                                                                                                                                                                                        |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
|------------------------------------------------------------------------------------------------------------------------------------------------------------------------------------------------------------------------------------------------------------------------------------------------------------------------------------------------------------------------------------------------------------------------------------------------------------------------------------------------------------|----------------------------------------------------------------------------------------------------------------------------------------------------------------------------------------------------------------------------------------------------------------------------------------------------------------------------------------------------------------------------------------------------------------------------------------------------------------------------------------------------------------------------------------------------------|
| <p>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점)</p> <p>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평가기관(4점)</li> <li>- 국내평가기관(4점)</li> </ul> <p>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자본비율(6)</li> <li>※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으로 평가</li> <li>- 고정이하여신비율(6)</li> <li>- 자기자본이익율(5)</li> </ul> <p>*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 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p> <p>*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p> | <p>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7점)</p> <p>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평가기관(4점)</li> <li>- 국내평가기관(4점)</li> </ul> <p>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자본비율(6)</li> <li>※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으로 평가</li> <li>- 고정이하여신비율(6)</li> <li>- 자기자본이익율(5)</li> <li>-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 등(2) - 항목추가</li> </ul> <p>*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 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p> <p>*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p> |
| <p>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점)</p> <p>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p> <p>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p> <p>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p>                                                                                                                                                                                                                                                                                                                                                                                                     | <p>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p> <p>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p> <p>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p> <p>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p> <p>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 항목추가</p> <p>※ 추가배점 불가</p>                                                                                                                                                                                                                                                                                                                                                                                                  |
| <p>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점)</p> <p>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기 설치 대수(7)</p> <p>※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p> <p>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5)</p> <p>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p>                                                                                                                                                                                                                                                                                                                                      | <p>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점)</p> <p>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기 설치 대수(8) - 추가배점</p> <p>※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p> <p>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 - 추가배점</p> <p>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 추가배점</p>                                                                                                                                                                                                                                                                                                                                                               |
| <p>4.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p> <p>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p> <p>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p> <p>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p> <p>*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p>                                                                                                                                                                                                                                                                                                                                                         | <p>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p> <p>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p> <p>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p> <p>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p> <p>*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p> <p>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 항목추가</p>                                                                                                                                                                                                                                                                                                                                                                   |
| <p>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7점)</p> <p>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점)</p> <p>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2점)</p> <p>*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p>                                                                                                                                                                                                                                                                                                                                                        | <p>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7점)</p> <p>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p> <p>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2점)</p> <p>*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p> <p>※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p>                                                                                                                                                                                                                                                                                                                                                                           |

## ②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

○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 ③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①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

※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5.-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하도록 명시

※ 2014.3.7. 개정·시행한 동 예규 부칙의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소관 사업에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2016.3.1.부터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변경

#### ②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

○ (금액 공개)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시보·도보·군보·구보)에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 <법제처 유권해석('02.5.31)>

○ 금고지정약정에 출연금이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기적 의미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 ③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④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

○ 자치단체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

\*\*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 비교

○ 복수금고의 경우에도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4. 금고의 지정절차

### 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함)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와 자치단체를 통합함에 따라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함

가.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

나.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

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함

○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③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의 제안서 심사 시 각 항목별 평가결과가 다른 항목의 평가결과에 상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4 평가결과의 공개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함

## 5 금고의 지정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함

# 5. 금고약정 및 해지

## 1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2 금고약정의 해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6. 보 칙

## 1 금고운용 보고

○ 자치단체의 장은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함

○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자치단

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토록 하여야 함

## ②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②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7. 부 칙

○ 이 예규는 2019년 5월 9일부터 시행함

<별 표>

###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 점                             | 비고 |
|----------------------------------|--------------------------------------------------------------------------------------------------------------------------------------------------------------------------------------------------------------------------------------------------------------------------------------------------------------------------------------------------------------------------------------------------------------|---------------------------------|----|
| 계                                |                                                                                                                                                                                                                                                                                                                                                                                                              | 100                             |    |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br>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br>- 국외평가기관(4점)<br>- 국내평가기관(4점)<br>※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br>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br>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br>-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br>※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br>-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br>-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br>*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br>각 지역조합 유형별산업 농수산업조합 새마을금고 등으로 다르므로<br>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br>*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br>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 25<br><br>(8)<br><br>(17)       |    |
| 2. 자치단체에 대한<br>대출 및 예금금리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br>나. 공금예금 적용금리<br>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 17<br><br>(7)<br>(6)<br>(4)     |    |
|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br>대수<br>*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br>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br>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18<br><br>(7)<br><br>(5)<br>(6) |    |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br>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br>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br>*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 22<br><br>(6)<br>(8)<br>(8)     |    |
|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 단체<br>와의 협력사업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br>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br>*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br>"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7<br><br>(5)<br>(2)             |    |
| 6. 기타 사항                         | 자치단체 자율항목<br>* 자율항목 점수를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br>결과 반영 가능<br>* '20년부터 자율항목 점수를 활용하여 주민의견 수렴결과<br>반영 가능                                                                                                                                                                                                                                                                                                          | 11                              |    |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953호

#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시정조치(개선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 안전기준 등의 확보를 위하여 개선명령을 시행하고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6일

## 남동구청장

1. 공 고 대 상 : 자동차관리법위반 대상자 45명 (별첨)

2. 공 고 기 간 : 2022. 5. 6. ~ 2022. 5. 21. (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상기와 같이 귀하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개선명령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공고기간 경과 후 개선명령 미 이행시 과태료 처분절차로 진행됩니다.

5. 위 공시송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 032-453-28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 시정조치(개선명령) 통지서 4월 반송분 공시송달내역

| 순번 | 차량번호       | 성명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위반항목           | 우편번호  | 주소                                                     |
|----|------------|-------------|-------------|-------|----------------|-------|--------------------------------------------------------|
| 1  | 인천부평아92**  | 박*일         | 2022.02.03. | 수취인불명 | 번호판 가림(불법가이드)  | 21511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
| 2  | 24모85**    | 김*윤         | 2022.03.18. | 폐문부재  | 방향지시등 상시 점등    | 21670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번길 *, ***동 ***호(논현동, **마을**아파트)       |
| 3  | 81무80**    | 신*호         | 2022.04.04. | 폐문부재  | 등화장치 불량(좌측제동등) | 2165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 ***동 ***호(논현동, ****한**에**아파트)       |
| 4  | 38오82**    | 양*주         | 2022.04.08. | 폐문부재  | 등화장치 불량(제동등)   | 21662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번길 **, ****동 ****호(논현동, **아파트)        |
| 5  | 인천32바18**  | 김*승         | 2022.04.08. | 폐문부재  | 등화장치 불량(제동등)   | 21656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번길 **, ***동 ****호(도림동, **주공**빌*단지아파트) |
| 6  | 경기수원라08**  | 지*진         | 2022.04.08. | 폐문부재  | 번호판 오염         | 2162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번길 *-**, **동 ***호(남촌동, **빌라)           |
| 7  | 충남천안카57**  | 김*자         | 2022.04.08. | 폐문부재  | 번호판 오염         | 21510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번길 **, ***호(간석동, 세**티)                 |
| 8  | 인천81사31**  | 주식회사<br>더*림 | 2022.04.08. | 폐문부재  | 번호판 꺾임         | 21582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번길 **(구월동, ***, *-호, **프라자)          |
| 9  | 인천연수다41**  | 김*수         | 2022.04.13. | 폐문부재  | 번호판 오염         | 21626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 ***, *동 ***호(남촌동, **빌라)                  |
| 10 | 84보33**    | 유*석         | 2022.04.08. | 폐문부재  | 번호판 상태 불량      | 21661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 ****동 ****호(논현동, **마을****아파트)       |
| 11 | 인천미추홀파10** | 이*훈         | 2022.04.08. | 폐문부재  | 번호판 꺾임         | 21572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번길 *-**, *동 ***호(구월동, **빌라)             |
| 12 | 경기수원라08**  | 지*진         | 2022.04.08. | 폐문부재  | 미인증 LED 설치     | 2162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번길 *-**, **동 ***호(남촌동, **빌라)           |
| 13 | 34저27**    | 차*환         | 2022.04.08. | 폐문부재  | 리플렉터 LED 설치    | 21510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 ***호(간석동, 더***스아파트)               |

|    |           |              |             |           |                      |       |                                                 |
|----|-----------|--------------|-------------|-----------|----------------------|-------|-------------------------------------------------|
| 14 | 인천남동파68** | 최*현          | 2022.04.08. | 폐문부재      | 미인증 LED 설치           | 2166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번길 **, ****동 ****호(논현동, **아파트) |
| 15 | 인천83바37** | 이*경          | 2022.04.18  | 폐문부재      | 등화장치불량<br>(좌측제동등)    | 2162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 ***동 ****호(남촌동, ***차**아파트)    |
| 16 | 97누18**   | (주)*도        | 2022.04.15  | 수취인불<br>명 | 등화장치불량<br>(우측제동등)    | 21634 | 인천광역시 남동구 승기천로 ***, *층(논현동)                     |
| 17 | 31무52**   | 이*규          | 2022.04.18  | 폐문부재      | 등화장치불량<br>(번호등)      | 21584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 ***동 ****호(구월동, 구*****들***지) |
| 18 | 02두61**   | 장*성          | 2022.04.18  | 폐문부재      | 등화장치불량<br>(좌측제동등)    | 21618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 ****동 ***호(서창동, 인천*****단지)    |
| 19 | 인천남동파75** | 김*숙          | 2022.04.18  | 폐문부재      | 번호판 꺾임               | 21541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 ***동 ****호(만수동, **아파트)       |
| 20 | 인천84배18** | 고*수          | 2022.04.18  | 폐문부재      | 번호판 부착불량             | 2152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번길 **, *동 ***호(만수동, 엑**트)        |
| 21 | 인천남동파33** | 이*남          | 2022.04.18  | 폐문부재      | 번호판<br>가림(미인증LED)    | 21510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호(간석동, **캐슬)          |
| 22 | 인천남동파67** | 박*영          | 2022.04.18  | 폐문부재      | 미인증 LED 설치           | 2152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번길 **, ***호(만수동, 삼***체)           |
| 23 | 68도74**   | 김*진          | 2022.04.18  | 폐문부재      | 안개등 미인증 LED<br>설치    | 21550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 *동 ****호(간석동, ***타워)        |
| 24 | 인천남동파69** | 이*미          | 2022.04.22  | 폐문부재      | 번호판 오염 미인증<br>LED 설치 | 21538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 ***동 ***호(만수동, **아파트)       |
| 25 | 86서70**   | 오*섭          | 2022.04.22  | 폐문부재      | 등화장치불량<br>(좌측제동등)    | 2150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 ***호(간석동, **오피스텔)            |
| 26 | 34우66**   | 오*환          | 2022.04.22  | 폐문부재      | 등화장치불량 (제동등)         | 2152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번길 **, *동 ***호(만수동, **아파트)      |
| 27 | 82구87**   | 이*욱          | 2022.04.22  | 폐문부재      | 등화장치불량<br>(우측제동등)    | 2151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차동 ***호(간석동, **빌라)      |
| 28 | 90러55**   | 장*현          | 2022.04.22  | 폐문부재      | 등화장치불량<br>(우측제동등)    | 21538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번길 **, *층(만수동)                 |
| 29 | 32도37**   | J**<br>N**RI | 2022.04.21  | 수취인불<br>명 | 등화장치불량<br>(좌측제동등)    | 21507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번길 **, ****호(간석동)               |
| 30 | 39오59**   | 이*연          | 2022.04.22  | 폐문부재      | 등화장치불량               | 2158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 ***호(구월동, 구*****드 더***티)   |

|    |            |         |            |      |                               |       |                                                             |
|----|------------|---------|------------|------|-------------------------------|-------|-------------------------------------------------------------|
|    |            |         | .          |      | (번호등)                         |       |                                                             |
| 31 | 55서95**    | 홍*화     | 2022.04.29 | 폐문부재 | 등화장치불량<br>(좌측제동등)             | 21540 |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번길 **-, ***호(만수동, **다세대주택)                   |
| 32 | 24오78**    | 김*희     | 2022.04.29 | 폐문부재 | 등화장치불량<br>(좌측제동등)             | 21650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 ***동 ***호(논현동, *****아 **마을)               |
| 33 | 인천84바22**  | 이*환     | 2022.04.29 | 폐문부재 | 등화장치불량<br>(우측제동등), 흡반이<br>미설치 | 2157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번길 **, *동 ***호(구월동, 덕****빌)                |
| 34 | 94가13**    | 이*복     | 2022.04.29 | 폐문부재 | 등화장치불량<br>(좌측제동등)             | 21627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 **, ***호(남촌동)                                 |
| 35 | 29소53**    | 이*우     | 2022.04.29 | 폐문부재 | 등화장치불량<br>(제동등)               | 2152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수북로**번길 **, *층(만수동)                              |
| 36 | 90서17**    | 박*수     | 2022.04.29 | 폐문부재 | 등화장치(제동등<br>덮개)               | 21519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나동 ***호(만수동, **빌라)                   |
| 37 | 82두79**    | 김*택     | 2022.04.29 | 폐문부재 | 등화장치불량<br>(제동등)               | 21507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번길 *, ***호(간석동, ***하우스)                     |
| 38 | 인천남동파53**  | 조*욱     | 2022.04.29 | 폐문부재 | 번호판<br>가림(휼더가드)               | 2157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번길 **-, ***호(구월동, ***오피스텔)                   |
| 39 | 인천남동파43**  | 최*열     | 2022.04.29 | 폐문부재 | 번호판 가림(카메라),<br>미인증 LED 설치    | 21680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번길 **, ***동 ****호(논현동,<br>에***로*****린아파트) |
| 40 | 인천계양아13**  | 백*우     | 2022.04.29 | 폐문부재 | 번호판 가림(인형)                    | 21520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번길 *-**, ***호(만수동, 태***빌라)                   |
| 41 | 인천남동타33**  | 김*혁     | 2022.04.29 | 폐문부재 | 반호판 꺾임                        | 21536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 ***호(구월동)                               |
| 42 | 인천연수나25**  | 박*우     | 2022.04.28 | 이사불명 | 번호판 오염                        | 21632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번길 **, ***호(논현동, ***차****시티)               |
| 43 | 인천미추홀파82** | 신*돈     | 2022.04.29 | 폐문부재 | 번호판 오염                        | 2154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번길 **, 다동 ***호(만수동, **빌라)                   |
| 44 | 803보41**   | 박*진     | 2022.04.29 | 폐문부재 | 번호판 오염,<br>등화장치불량<br>(좌측제동등)  | 2150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 ***호(간석동, 성***빌)                         |
| 45 | 86소92**    | 삼**경(주) | 2022.05.02 | 폐문부재 | 최고속도제한장치<br>무단해체<br>의심(경찰청)   | 21537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 ***호(구월동, **빌딩)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964호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9일

## 남 동 구 청 장

###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조항 이동에 따른 정비를 실시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금연지도원 활동에 필요한 피복, 상해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 2. 주요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조항 이동에 따른 조례 조항 정비  
(안 제1조, 제3조제1항제3호, 제5호)
- 금연지도원 활동시간을 명확하게 규정 및 피복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안 제7조제1항, 제3항)
- 제8조 삭제 및 정비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건강증진과장)에게 서면이나 전

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 453-5103, FAX 453-511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http://www.namdong.go.kr)/입법예고)

#### 4. 참고사항

○ 일부개정 조례안: 별첨

##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년월일 : 2022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조항」 이동에 따른 정비 및 금연지도원 활동시간 등을 명확히 하고 금연지도원 활동에 필요한 피복, 상해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조항 이동에 따른 조례 조항 정비 (안 제1조, 제3조제1항제3호, 제5호)
- 활동시간 등을 명확하게 규정 및 피복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안 제7조제1항, 제3항)

### ☐ 본 문 : “별첨”

###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 참고자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후그”를 “후 그”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활동수당)”을 “(활동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4시간이상)”을 “(4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야간, 새벽”을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를 말한다)”으로,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활동수당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피복비 및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 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금연지도원 신청서

|     |              |  |                 |
|-----|--------------|--|-----------------|
| 신청인 | 성 명<br>(한 자) |  | 사진<br>(3cm×4cm) |
|     | 생년월일         |  |                 |
|     | 주소(전화번호)     |  |                 |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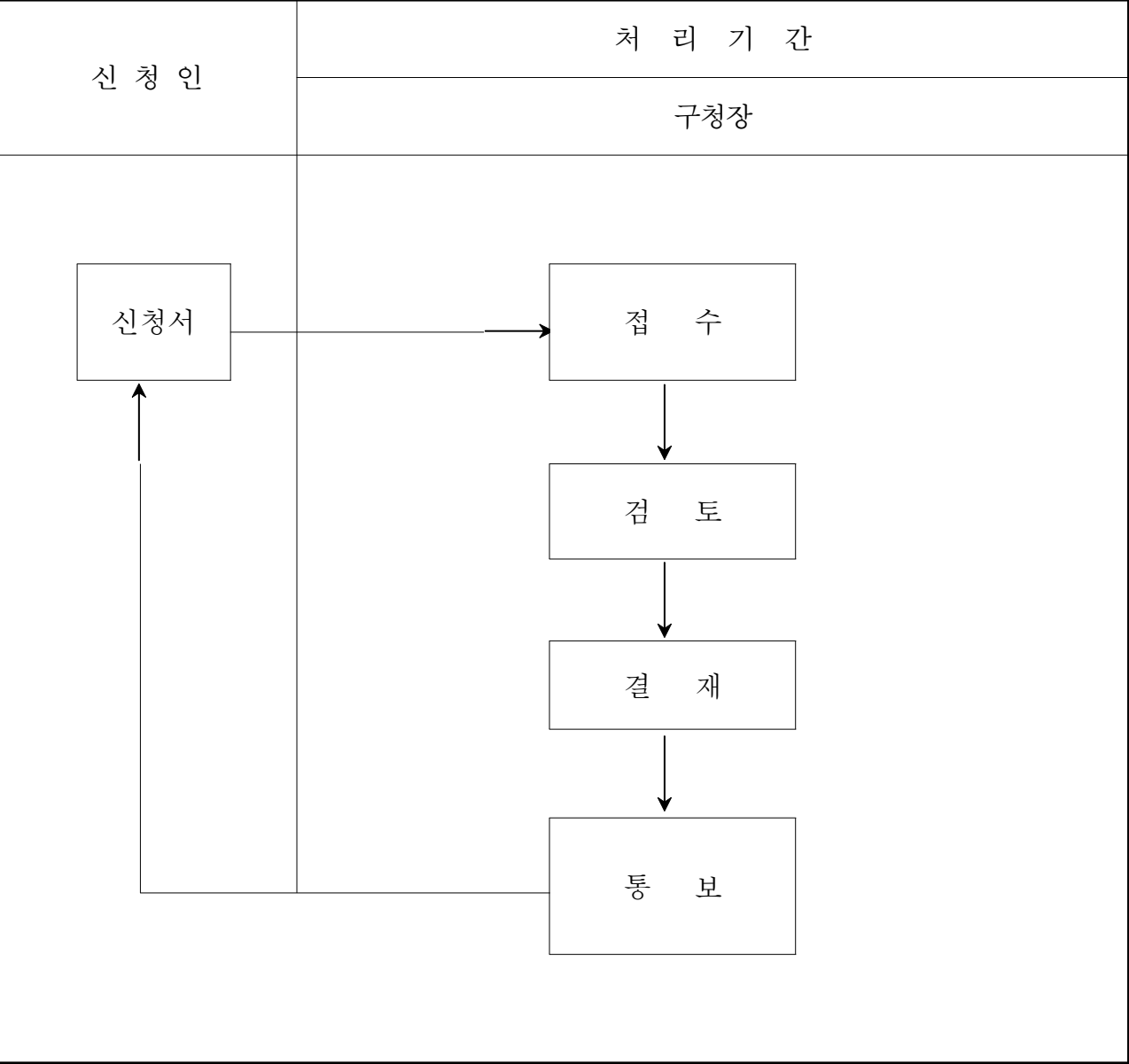
남동구청장 귀하

|     |                                                                                                                                                                                         |
|-----|-----------------------------------------------------------------------------------------------------------------------------------------------------------------------------------------|
| 첨부물 |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br>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br>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2호 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     |            |  |                 |
|-----|------------|--|-----------------|
| 신청인 | 성명<br>(한자) |  | 사진<br>(3cm×4cm) |
|     | 생년월일       |  |                 |
|     | 주소(전화번호)   |  |                 |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     |            |  |                 |
|-----|------------|--|-----------------|
| 신청인 | 성명<br>(한자) |  | 사진<br>(3cm×4cm) |
|     | 생년월일       |  |                 |
|     | 주소(전화번호)   |  |                 |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           |           |                        |        |  |
|-----------|-----------|------------------------|--------|--|
| 금연<br>지도원 | ① 소속(단체명) |                        | ② 성 명  |  |
|           | ③ 생년월일    |                        | ④ 전화번호 |  |
|           | ⑤ 주 소     |                        |        |  |
| ⑥ 출입 기간   |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
| ⑦ 출입 장소   |           |                        |        |  |
| ⑧ 직무수행범위  |           |                        |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br>-----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br>-----<br>-----<br>-----.  |
| 제3조(위촉)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 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위촉) ① -----<br>-----<br>-----<br>-----<br>-----<br>-----<br>-----<br>-----. |
| 1. 2.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
|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 3. -----<br>-----<br>-----<br>제16조의5제1항제1호-----<br>-----<br>-----<br>-----      |
|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                                                                                                                              | ② -----                                                                         |

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  
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  
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  
한 후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 ⑤ (생략)

제5조(해촉) 구청장은 법 제9조의  
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  
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  
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  
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  
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  
연지도원증을 회수,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  
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  
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활동수당) ① 구청장은 예  
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  
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

-----  
-----  
-----  
-----  
-- 후 그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해촉) -----  
-----  
-----  
-----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  
-----  
-----  
-----  
-----  
-----  
-----  
-----  
-----  
-----.

제7조(활동지원) ① -----  
-----  
---(4시간 -----  
-----  
-----  
-----  
-----  
----- 야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  
시 사이를 말한다)----- 활

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동수당의 100분의 50을 가산하  
여 산정하며, 이 경우 1일당 최  
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  
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보호  
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피복비 및 상해보험료를 지원  
할 수 있다.

<삭 제>

[참고자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증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3. 17.>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30.>

1.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2.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업무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6. 6. 2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965호

**취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           |   |         |
|-----------|---|---------|
| 성         | 명 | 안**희    |
| 주소 또는 거소  |   | 내역별첨    |
| 서 류 의 명 칭 |   | 취득세 고지서 |
| 서 류 의 내 용 |   | 취득세 고지서 |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능인 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9일

**남 동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역(취득세 수시분)

| 연번 | 주민법인번호       | 납세자명 | 과세번호                        | 세목  | 부과일         | 공고사유 | 세액합계    |
|----|--------------|------|-----------------------------|-----|-------------|------|---------|
| 1  | 940903-***** | 안**희 | 101501 2022 05 2 550 024783 | 취득세 | 2022.05.09. | 주소불명 | 612,220 |

##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11일

남 동 구 청 장

###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가 개정됨에 따라 “재난안전예산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편성 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사전 조정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치기 위함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사회재난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 신설
-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신설
-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신설
- 구상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신설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5.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안전총괄과
- 연 락 처 : 전화 453-2314 FAX 453-2319

### 4. 참고사항

-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11조제1항”을 “제10조의4 및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안전관리위원회 및 제7조 규정에 의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를 “안전관리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
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② 안전예산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 총괄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소속된 기관의 내부직원 중 안전예산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 총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을 “법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을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원인제공자”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로, 같은 호 및 제3호 중 “재난피해자”를 각각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지원기준)”을 “(지원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위한”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제63조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을 “고시하거나”로,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를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0조 앞에 “제6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을 삭제한다.

제76조를 제78조로 하고, 제74조를 제76조로 하며, 제72조를 제74조로 하고, 제70조를 제72조로 한다.

제75조를 제77조로 하고, 제73조를 제75조로 하며, 제71조를 제73조로 하고,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를 각각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로 하며, 제64조 및 제6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원인제공자에게 제63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64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종전의 제64조)제목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를 “원인제공자”로 한다.

제66조(종전의 제64조)의 제목 “(중복지원 제한)”을 “(중복지원 금지)”로 한다.

제67조(종전의 제65조)제1항 중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으로,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피해자는”을 “피해주민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자가”를 “피해주민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구청장이 재난피해자가” 를 “구청장은 피해주민이” 로, “재난피해자의” 를 “피해주민의” 로 한다.

제68조(종전의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5조제6항” 을 “제67조제6항” 으로 한다.

제69조(종전의 제67조) 본문 중 “제65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 를 “제67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 으로, “재난피해자 명의” 를 “피해주민의 명의” 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재난피해자” 를 “피해주민” 으로 한다.

제70조(종전의 제68조) 중 “제65조제6항” 을 “제67조제6항” 으로, “제64조” 를 “제66조” 로 한다.

제72조 앞에 “제6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 을 삽입한다.

제77조(종전의 제75조)제2항 중 “제72조” 를 “제74조” 로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62조에 따른 지원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비용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4조는 이 조례 개정 이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    |  |        |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휴대전화번호 | -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            |      |                  |   |        |                               |                       |
|------------|------|------------------|---|--------|-------------------------------|-----------------------|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                       |
| 연락처        | 휴대전화 | -                | - | 통신사명   | [ ]KT [ ]SKT<br>[ ]LGU+ [ ]기타 | 가입자정보<br>성명:<br>생년월일: |
|            | 유선전화 | ( )              | - | 통신사명   |                               | 가입자정보<br>성명:<br>생년월일: |
| 세대주 여부     |      | [ ] 세대주, [ ] 세대원 |   | 가족 수   | 명 (본인 포함 세대원)                 |                       |
| 고등학생 수     |      | ( ) 고등학교         |   | 명      | [비전문계 / 전문계]                  |                       |
| 도시가스 사용 여부 |      | 여 [ ] , 부 [ ]    |   | 가입자명:  | 생년월일:                         |                       |
| 계좌번호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3. 피해내용

|         |             |                                                            |     |     |     |
|---------|-------------|------------------------------------------------------------|-----|-----|-----|
| 피해발생 일시 |             |                                                            |     |     |     |
| 피해발생 장소 |             |                                                            |     |     |     |
| 인명 피해   | 신고          | [ ] 사망·실종, [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     |     |
|         |             |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     |     |     |
|         | 확정          | [ ] 사망·실종, [ ] 부상(부상 정도: ),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     |     |     |
| 시설 피해   | 시설명         | ①                                                          | ②   | ③   | ④   |
|         | 총면적(소유+임차)  | ①                                                          | ②   | ③   | ④   |
|         | 면허·허가·등록 번호 | ①                                                          | ②   | ③   | ④   |
|         | 피해 물량       | 신고                                                         | ①   | ②   | ③   |
|         |             | 확정                                                         | ①   | ②   | ③   |
|         | 피해 구분       | ①                                                          | ②   | ③   | ④   |
|         | 피해 원인       | ①                                                          | ②   | ③   | ④   |
|         | 용자신청 여부     | [ ]                                                        | [ ] | [ ] | [ ] |

### 4. 확인사항

|                 |               |     |
|-----------------|---------------|-----|
| 동일세대 신고 여부      | 여 [ ] , 부 [ ] | 내용: |
| 타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 여 [ ] , 부 [ ] | 내용: |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7조제2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남동구청장이 생활안전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남동구청장이 용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8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8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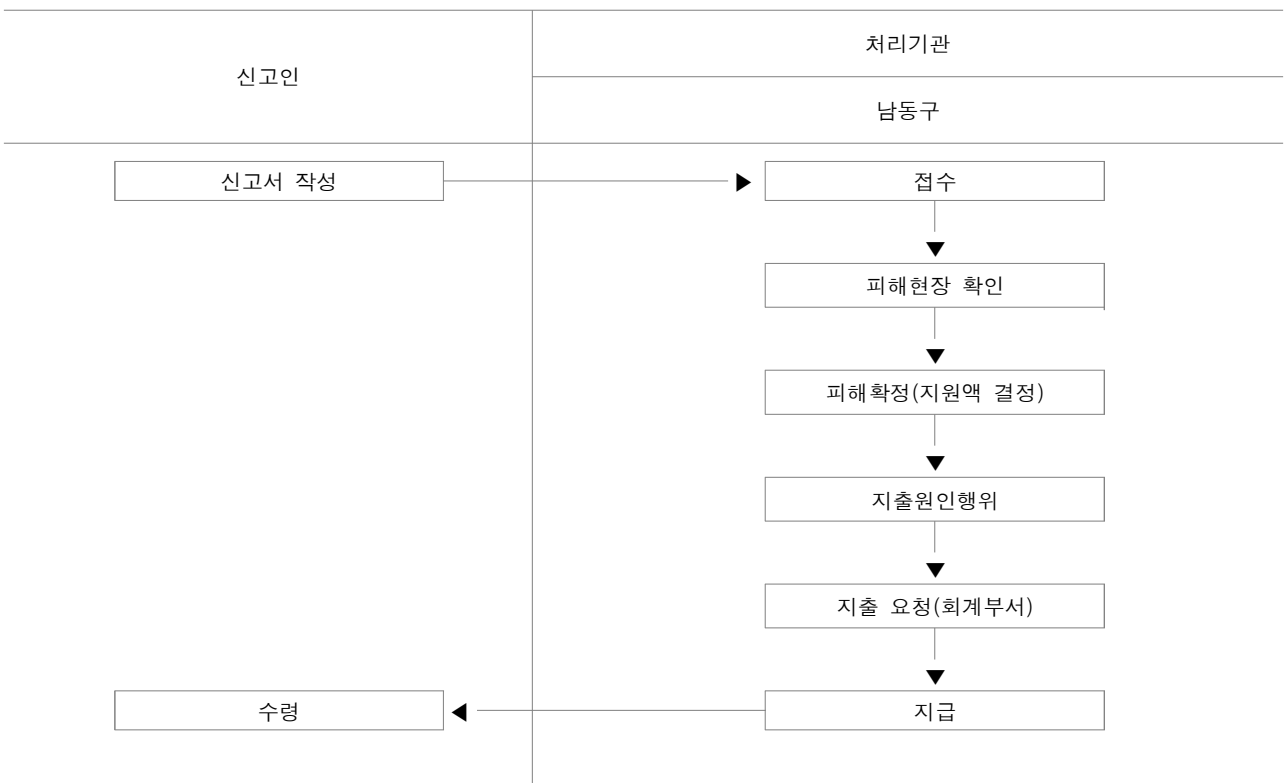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 작성 방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전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 처리 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4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br>-----<br>----- 제10조의4 및 제11조제1항 -----<br>-----<br>-----<br>-----.                                                                     |
| 제5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br>③ 안전관리위원회 및 제7조 규정에 의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해당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br>④ 안전관리위원회 -----<br>-----<br>-----<br>-----<br>-----<br>-----.                                                               |
|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생략)<br>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2. (생략)<br>3. 지역축제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br>4. (생략)<br>③ ~ ⑦ (생략)<br>＜신설＞                   |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1. 2. (현행과 같음)<br>＜삭제＞<br><br>3. (현행 제4호와 같음)<br>③ ~ ⑦ (현행과 같음)<br>제7조의2(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br>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

제1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자연재난대  
책기간(자연재난 중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운영하는 기간을 말한다)과 관할  
지역에서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  
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대응·복구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  
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  
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  
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  
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

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② 안전예산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 총  
괄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은 소속된 기관의 내부직원 중 안  
전예산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  
사는 재난 및 안전 총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

-----  
-----  
-----  
-----  
-----  
-----  
-----

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의 대응체계가 구성·운영되는 경우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대책본부를 운영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생략)

제62조(지원결정) ① 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생략)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략)

제63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관계

-----.  
----- 법 제14조에 따라 -----  
-----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지원결정) ① -----  
-----  
-----  
----- 피해주민-----  
-----  
-----.

1. -----  
-----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  
- 피해주민-----  
-----

2. (현행과 같음)

3. -----  
----- 피해주민-----  
-----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지원 기준) ① -----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신설>

<신설>

-----  
----- 피해주민-----  
-- 위하여 -----  
-----.

1. ~ 3. (현행과 같음)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  
-----  
고시하거나 -----  
-----  
-----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4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

<신 설>

제64조(중복지원 제한)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

은 원인제공자에게 제63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64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  
-----  
----- 원인제공자-----  
-----  
-----  
-----.

제6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  
----- 피해주민-----  
-----.

② ----- 피해주민은 -----  
-----  
-----  
-----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④ (생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생략)

제66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5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 8. (생략)

제67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65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

-----.

③ ----- 피해주민이  
-----  
-----  
-----  
-----.

1.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구청장은  
피해주민이 -----  
-----  
----- 피해주민의 -----  
-----  
-----.

⑥ (현행과 같음)

제6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 제67조제6항-----  
-----  
-----  
-----  
-----.

1. ~ 8. (현행과 같음)

제69조(지급방법) ----- 제67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  
-----

피해주민의 명의

피

해주민

제70조(환수) ----- 제67조제6항-  
-----  
-----  
-----  
- 제66조-----  
-----  
-----  
-----

제71조 (현행 제69조와 같음)

<삭 제>

제72조 ~ 제76조 (현행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와 같음)

제77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74조 -----  
-----  
-----  
-----.

③ (현행과 같음)

제78조 (현행 제76조와 같음)

[참고자료]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구축 및 기능 강화
  3. 재난취약 지역·시설 등의 위험요소 제거 및 기능 회복
  4. 재난안전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이 승인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결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

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

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產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1)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농업·어업·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

1)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2)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

라.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

마.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

바. 농업·어업·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사용되는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다음의 지원. 다만,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소득 중에서 농업·어업·임업 및 소금생산업으로 인한 소득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농경지 및 염전 복구

2)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3)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시설에 새로운 가축 등을 들여놓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5)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2. 간접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농업인·어업인·임업인 및 소금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

나. 농업·어업·임업 및 소금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라.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

마.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3. 피해수습지원: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가. 공공시설의 복구

나.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다.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라.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등의 추모사업

마. 파손된 주택의 철거

바.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감정평가 및 손해액 산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 ①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필요한 국고와 지방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실제 비용과 피해금액 등을 기초로 별표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확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신설 관련 표준 조례안(행정안전부)

### ○○시·도/시·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조(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

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② 안전예산위원장은 행정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③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안전예산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내부직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참고 조례안(행정안전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도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도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도 / 시·군·구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시·도 / ○○시·군·구(이하 “시·도 / 시·군·구”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기준)** ①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그 밖에 시·도 / 시·군·구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시·도 / 시·군·구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이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0조(지급방법)**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4조 및 제7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재원의 확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 시·군·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

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지 서식]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    |  |        |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휴대전화번호 | -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            |                                                   |        |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 주거 형태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        |                                                 |
| 연락처        | 휴대전화                                              | -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
|            | 유선전화                                              | (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
| 세대주 여부     | [ ] 세대주, [ ] 세대원                                  |        | 가족 수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
| 고등학생 수     |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                                                 |
| 도시가스 사용 여부 | 여 [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        |                                                 |
| 계좌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3. 피해내용

|         |             |                                                            |
|---------|-------------|------------------------------------------------------------|
| 피해발생 일시 |             |                                                            |
| 피해발생 장소 |             |                                                            |
| 인명 피해   | 신고          | [ ] 사망·실종, [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         |             |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
|         | 확정          | [ ] 사망·실종, [ ] 부상(부상 정도: ),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
| 시설 피해   | 시설명         | ① ② ③ ④                                                    |
|         | 총면적(소유+임차)  | ① ② ③ ④                                                    |
|         | 면허·허가·등록 번호 | ① ② ③ ④                                                    |
|         | 피해 신고       | ① ② ③ ④                                                    |
|         | 물량 확정       | ① ② ③ ④                                                    |
|         | 피해 구분       | ① ② ③ ④                                                    |
|         | 피해 원인       | ① ② ③ ④                                                    |
|         | 용자신청 여부     | [ ] [ ] [ ] [ ]                                            |

4. 확인사항

|                 |              |     |
|-----------------|--------------|-----|
| 동일세대 신고 여부      | 여 [ ], 부 [ ] | 내용: |
| 타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 여 [ ], 부 [ ] | 내용: |

「○○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안전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용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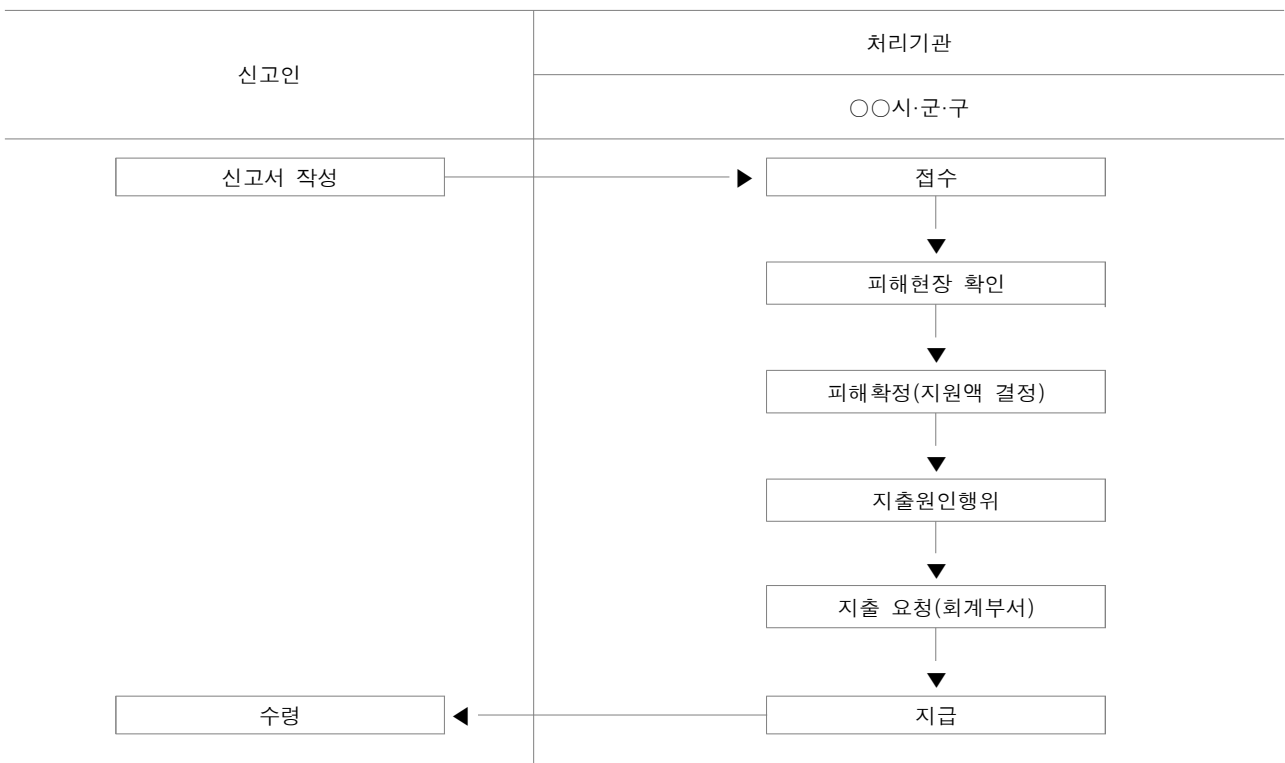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 작성 방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전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인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 처리 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983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림2지구 소로3-7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남동구 고시 제2018-121호(2018.10.26.)로 실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림2지구 소로3-7호선)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2일

## 남 동 구 청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5-10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도림2지구 소로3-7호선 도로개설공사

### 3. 사업규모

- L=538m, B=6m, A=4,645㎡

###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도시재생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 5.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일

- 2018.10.26. ~ 준공검사증명서 발급일

용 지 조 서(변경)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br>(㎡) | 편입면적<br>(㎡) | 잔여면적<br>(㎡) | 소유자         |                          | 관계자 |                      |                  | 비고           |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소유권<br>이외의<br>권리 |              |
| 1  | 고잔동 | 350-30 | 장  | 2           | 2           | 0           | 송**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br>*** **  |     |                      |                  |              |
| 2  | 고잔동 | 350-34 | 도  | 1           | 1           | 0           | 송**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br>*** **  |     |                      |                  |              |
| 3  | 고잔동 | 350-28 | 답  | 1           | 1           | 0           | 남동구         | -                        |     |                      |                  |              |
| 4  | 고잔동 | 586-33 | 도  | 10          | 10          | 0           | 국(건설<br>부)  | -                        |     |                      |                  |              |
| 5  | 고잔동 | 374-2  | 답  | 460         | 460         | 0           | 고** 외<br>2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br>***     | 남**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 | 근저당권             |              |
| 6  | 고잔동 | 586-67 | 도  | 1,171       | 62          | 1,109       | 국(건설<br>부)  | -                        |     |                      |                  |              |
|    | 고잔동 | 586-74 | 도  | 61          | 61          | 0           | 국(건설<br>부)  | -                        |     |                      |                  | (분할)<br>지번변경 |
| 7  | 고잔동 | 350-18 | 도  | 5           | 5           | 0           | 윤**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br>***  |     |                      |                  | 신규           |
| 8  | 고잔동 | 373-3  | 답  | 186         | 166         | 20          | 최**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br>*** **  |     |                      |                  |              |
|    | 고잔동 | 373-3  | 답  | 172         | 172         | 0           |             |                          |     |                      |                  | (분할)<br>면적변경 |
| 9  | 고잔동 | 372-39 | 답  | 127         | 127         | 0           | 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br>*** **  |     |                      |                  |              |
| 10 | 고잔동 | 372-41 | 전  | 58          | 58          | 0           | 전**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br>*** **  |     |                      |                  |              |
| 11 | 고잔동 | 372-32 | 전  | 157         | 157         | 0           | 김**<br>외 1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br>*** **  |     |                      |                  |              |
| 12 | 고잔동 | 375-2  | 답  | 288         | 288         | 0           | 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br>*** **  |     |                      |                  |              |
| 13 | 고잔동 | 372-38 | 답  | 16          | 16          | 0           | 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br>*** **  |     |                      |                  |              |
| 14 | 고잔동 | 379-30 | 전  | 43          | 43          | 0           | 강**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br>*** ** | 인** | 인천광역시 남구 경<br>인로 *** | 근저당권<br>지상권      |              |
| 15 | 고잔동 | 372-68 | 답  | 8           | 8           | 0           | 남동구         | -                        |     |                      |                  | 신규           |
| 16 | 고잔동 | 379-38 | 전  | 102         | 102         | 0           | 남동구         | -                        |     |                      |                  | 신규           |
| 17 | 고잔동 | 372-77 | 전  | 23          | 23          | 0           | 남동구         | -                        |     |                      |                  | 신규           |
| 18 | 고잔동 | 372-76 | 전  | 11          | 11          | 0           | 남동구         | -                        |     |                      |                  | 신규           |
| 19 | 고잔동 | 379-37 | 전  | 103         | 103         | 0           | 남동구         | -                        |     |                      |                  | 신규           |

|    |     |        |   |         |     |         |             |                          |     |                            |             |              |
|----|-----|--------|---|---------|-----|---------|-------------|--------------------------|-----|----------------------------|-------------|--------------|
| 20 | 고잔동 | 379-29 | 전 | 41      | 41  | 0       | 강**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br>*** ** | 인** | 인천광역시 남구 경<br>인로 ***       | 근저당권<br>지상권 |              |
| 21 | 고잔동 | 376-2  | 전 | 375     | 375 | 0       | 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br>*** ** |     |                            |             |              |
| 22 | 고잔동 | 372-49 | 전 | 98      | 98  | 0       | 강** 외<br>3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br>*** ** | 인** | 인천광역시 남구 경<br>인로 ***       | 근저당권<br>지상권 |              |
| 23 | 고잔동 | 372-64 | 전 | 11      | 11  | 0       | 여** 외<br>4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br>*** **  | 서** | 서울특별시 강서구<br>양천로 ***       | 근저당권        |              |
| 24 | 고잔동 | 377-2  | 전 | 682     | 639 | 43      | 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br>*** ** | 죽** | 경상북도 울진군 죽<br>변면 죽변중앙로 *** | 근저당권<br>지상권 |              |
|    | 고잔동 | 377-2  | 전 | 625     | 625 | 625     | 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br>*** ** | 죽** | 경상북도 울진군 죽<br>변면 죽변중앙로 *** | 근저당권<br>지상권 | (분할)<br>면적변경 |
| 25 | 고잔동 | 409-8  | 잡 | 1,103   | 8   | 1,095   | 김** 외<br>1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br>*** **  | 주** | 서울특별시 중구 소<br>공로 ***       | 근저당권        |              |
| 26 | 고잔동 | 409-34 | 답 | 67      | 0   | 67      | 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br>*** **  | 농** | 서울특별시 중구 소<br>공로 ***       | 근저당권        |              |
| 27 | 고잔동 | 409-40 | 답 | 165     | 165 | 0       | 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br>*** **  | 농** | 서울특별시 중구 소<br>공로 ***       | 근저당권        |              |
| 28 | 고잔동 | 409-41 | 답 | 5       | 0   | 5       | 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br>*** **  | 농** | 서울특별시 중구 소<br>공로 ***       | 근저당권        |              |
| 29 | 고잔동 | 409-31 | 도 | 11      | 11  | 0       | 주**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br>*** **  | 중** | 서울특별시 중구 을<br>지로 ***       | 근저당권        |              |
| 30 | 고잔동 | 408    | 잡 | 954     | 0   | 954     | 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br>*** **  | 권** | 서울특별시 강남구<br>대치동 ***       |             |              |
| 31 | 고잔동 | 408-4  | 잡 | 639     | 639 | 0       | 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br>*** **  |     |                            |             |              |
| 32 | 고잔동 | 379-6  | 도 | 4,002   | 156 | 3,846   | 남동구         | -                        |     |                            |             |              |
|    | 고잔동 | 379-36 | 도 | 163     | 163 | 0       | 남동구         | -                        |     |                            |             | (분할)<br>지번변경 |
| 33 | 고잔동 | 374    | 장 | 1,407   | 15  | 1,392   | 고** 외<br>1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br>*** **  | 남**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       | 근저당권        |              |
|    | 고잔동 | 374-9  | 장 | 3       | 3   | 0       | 고** 외<br>1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br>*** **  | 남**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       | 근저당권        | (분할)<br>지번변경 |
| 34 | 고잔동 | 379-22 | 잡 | 122     | 7   | 115     | 강**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br>*** ** | 인** | 인천광역시 남구 경<br>인로 ***       | 근저당권<br>지상권 |              |
|    | 고잔동 | 379-22 | 잡 | 72      | 7   | 65      | 강**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br>*** ** | 인** | 인천광역시 남구 경<br>인로 ***       | 근저당권<br>지상권 | (분할)<br>면적변경 |
| 35 | 고잔동 | 372-16 | 장 | 1,936   | 2   | 1,934   | 김** 외<br>1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br>*** **  |     |                            |             |              |
|    | 고잔동 | 372-16 | 장 | 1,933   | 2   | 1,931.0 | 김** 외<br>1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br>*** **  |     |                            |             | (분할)<br>면적변경 |
| 36 | 논현동 | 738-8  | 공 | 247,750 | 2   | 247,748 | 남동구         | -                        |     |                            |             |              |
| 37 | 고잔동 | 379-2  | 잡 | 778     | 0   | 778     | 이**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br>*** **  | 중** | 서울특별시 중구 을<br>지로***        | 근저당권        |              |
| 38 | 고잔동 | 379-34 | 잡 | 2       | 2   | 0       | 이**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br>*** **  | 중** | 서울특별시 중구 을<br>지로***        | 근저당권        |              |

|     |     |        |   |          |         |          |             |                            |  |  |  |    |
|-----|-----|--------|---|----------|---------|----------|-------------|----------------------------|--|--|--|----|
| 39  | 고잔동 | 372-72 | 장 | 3        | 3       | 0        | 김** 외<br>1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br>*** **    |  |  |  | 신규 |
| 40  | 고잔동 | 372-74 | 장 | 3        | 3       | 0        | 이**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br>로 *** ** |  |  |  | 신규 |
| 41  | 논현동 | 787    | 도 | 61,216.2 | 16.8    | 61,199.4 | 인천<br>광역시   | -                          |  |  |  | 신규 |
| 기 정 |     | 합 계    |   | 262,668  | 3,549   | 259,119  |             |                            |  |  |  |    |
| 변 경 |     | 합 계    |   | 67,008.2 | 3,812.8 | 63,195.4 |             |                            |  |  |  |    |

지 장 물 건 조 서(당초)

| 일련<br>번호 | 동  | 지 번    | 물건의<br>종류 | 구조 및 규격 |       | 수 량<br>(㎡) | 수 량<br>(개소) | 소유자 |                    | 비 고 |
|----------|----|--------|-----------|---------|-------|------------|-------------|-----|--------------------|-----|
|          |    |        |           |         |       |            |             | 성 명 | 주 소                |     |
| 1        | 고잔 | 374-2  | EGI웬스     | 출입문     | 웬스    | 584        |             | 고**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     |
|          |    |        | 계근대       | 철재      |       |            | 1           |     |                    |     |
|          |    |        | 기타        | 집계      | 배전반   |            | 2           |     |                    |     |
| 2        | 고잔 | 372-32 | 철망+강관     | 출입문     | 웬스    | 119        |             | 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     |
|          |    |        | 화단        | 라일락     |       |            | 3           |     |                    |     |
|          |    |        |           | 백일홍     |       |            | 3           |     |                    |     |
|          |    |        |           | 기타      |       |            |             |     |                    |     |
|          |    |        | 컨테이너      | 휴게소     |       |            | 1           |     |                    |     |
|          |    |        |           | 창고      |       |            | 1           |     |                    |     |
| 3        | 고잔 | 372-16 | PE제품      | 저장시설    | Φ1500 |            | 8           | 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  |     |
|          |    |        |           |         | Φ800  |            | 1           |     |                    |     |
|          |    |        | 모터기       |         |       |            | 1           |     |                    |     |
|          |    |        | 기계장치      | 냉각수     |       |            | 1           |     |                    |     |
|          |    |        | 저장소       | LPG     | 바닥기초  | 1          | 1           |     |                    |     |
| 4        | 고잔 | 376-2  | 철재        | 출입문     |       | 14         |             | 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 |     |
| 5        | 고잔 | 376-2  | 철재        | 웬스      |       | 127        |             | 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 |     |
| 6        | 고잔 | 377-2  | 메쉬웬스      | 출입문     |       | 18         |             | 오**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   |     |
|          |    |        | 컨테이너      | 휴게소     |       |            | 1           |     |                    |     |
|          |    |        | 컨테이너      | 창고      |       |            | 1           |     |                    |     |
| 7        | 고잔 | 409-34 | 천막+강관     | 창고      |       | 168        |             | 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     |
|          |    |        | 컨테이너      | 사무실     |       |            | 1           |     |                    |     |
|          |    |        | 컨테이너      | 창고      |       |            | 2           |     |                    |     |
| 8        | 고잔 | 408    | 철재        | 웬스      | 출입문   | 514        |             | 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  |     |

|     |  |  |       |     |  |       |    |  |  |
|-----|--|--|-------|-----|--|-------|----|--|--|
|     |  |  | 천막+강관 | 창고  |  | 135   |    |  |  |
|     |  |  | 컨테이너  | 사무실 |  |       | 1  |  |  |
|     |  |  | 컨테이너  | 창고  |  |       | 1  |  |  |
| 소 계 |  |  |       |     |  | 1,679 | 30 |  |  |

지 장 물 건 조 서(변경)

| 일련<br>번호 | 동  | 지 번    | 물건의<br>종류 | 구조 및 규격 |    | 전체수량   | 편입수량   | 소유자 |                    | 비 고 |
|----------|----|--------|-----------|---------|----|--------|--------|-----|--------------------|-----|
|          |    |        |           |         |    |        |        | 성 명 | 주 소                |     |
| 1        | 고잔 | 374-2  | 출입문       | 함석      |    | 12.5m  | 12.5m  | 고**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     |
|          |    |        | 담장        | 함석      |    | 70.0m  | 54.6m  |     |                    |     |
|          |    |        | 칸막이       | 함석      |    | 30.6m  | 30.6m  |     |                    |     |
|          |    |        | 계근대       | 계근대     |    | 20.2m² | 20.2m² |     |                    |     |
|          |    |        | 집계        | 강재      |    | 1개소    | 1개소    |     |                    |     |
|          |    |        | 배전반       |         |    | 1개소    | 1개소    |     |                    |     |
| 2        | 고잔 | 372-32 | 철망+강관     | 출입문     | 웬스 | 11.5m  | 11.5m  | 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     |
|          |    |        | 철망+강관     | 담장      |    | 21.7m  |        |     |                    |     |
|          |    |        | 컨테이너      | 창고,휴게소  |    | 30.0m² |        |     |                    |     |
|          |    |        |           | 수목      |    | 6주     |        |     |                    |     |
|          |    |        |           |         |    |        |        |     |                    |     |
| 3        | 고잔 | 375-2  | 저장통       | FRP     |    | 9개소    |        | 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     |
|          |    |        | 압출기       | 모터기     |    | 1개소    |        |     |                    |     |
|          |    |        | 냉각시설      | 기계시설    |    | 1.6m²  |        |     |                    |     |
|          |    |        | LPG저장소    | 콘크리트    |    | 1.3m²  |        |     |                    |     |
|          |    |        |           |         |    |        |        |     |                    |     |
| 4        | 고잔 | 376-2  | 파지압축기     | 기계장치    |    | 1식     |        | 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 |     |
|          |    |        | 담장        | 함석      |    | 27.2m  | 6.2m   |     |                    |     |
|          |    |        | 담장        | 철판      |    | 34.6m  | 13.8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고잔 | 377-2             | 담장      | 철판            |  | 17.7m   | 3.0m   | 정** | 010-****           |  |
|   |    |                   | 담장      | 철판            |  | 26.4m   | 9.8m   |     |                    |  |
|   |    |                   |         |               |  |         |        |     |                    |  |
| 6 | 고잔 | 377-2             | 창고      | 컨테이너          |  | 18.0m²  | 18.0m² | 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 |  |
|   |    |                   | 담장      | 함석            |  | 41.8m   | 18.4m  |     |                    |  |
|   |    |                   | 담장      | 샌드위치<br>패널    |  | 4.8m    | 1.7m   |     |                    |  |
|   |    |                   | 출입문     | 메쉬웬스          |  | 1.7m    | 1.7m   |     |                    |  |
|   |    |                   | 담장      | 메쉬웬스          |  | 11.8m   | 0      |     |                    |  |
|   |    |                   | 사무실,창고  | 컨테이너          |  | 36.0m   | 0      |     |                    |  |
|   |    |                   |         |               |  |         |        |     |                    |  |
| 7 | 고잔 | 409-40<br>(409-7) | 창고      | 강관,천막         |  | 117.4m² | 45.9m² | 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  |
|   |    |                   | 창고      | 컨테이너          |  | 15.0m²  | 15.0m² |     |                    |  |
|   |    |                   |         |               |  |         |        |     |                    |  |
| 8 | 고잔 | 408-4<br>(408)    | 창고      | 강관,천막         |  | 195.1m² | 68.1m² | 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    |  |
|   |    |                   | 사무실, 창고 | 컨테이너          |  | 54.0m²  | 54.0m² |     |                    |  |
|   |    |                   | 옹벽      | 콘크리트          |  | 22.5m   | 3.8m   |     |                    |  |
|   |    |                   | 담장      | 강관,함석,<br>방진막 |  | 133.0m  | 41.0m  |     |                    |  |
|   |    |                   | 출입문     | 각파이프,<br>목재   |  | 6.7m    | 6.7m   |     |                    |  |
|   |    |                   |         |               |  |         |        |     |                    |  |

한 전 주 조 서

| 번호 | 소 재 지   | 지 번   | 위 치(STA) | 방 향 | 전 주 번 호   | 소 관 청 | 비 고     |
|----|---------|-------|----------|-----|-----------|-------|---------|
| 1  | 남동구 고잔동 | 374-2 | 2,008    | 좌측  | 8716X 981 | 한국전력  | 소로-10호선 |

|   |   |        |        |    |           |      |   |
|---|---|--------|--------|----|-----------|------|---|
| 2 | " | 586-2  | 3,002  | 우측 | 8716X 995 | 한국전력 | " |
| 3 | " | 372-39 | 3,018  | "  | 8716X 993 | 한국전력 | " |
| 4 | " | 372-39 | 4,006  | "  | 8716X 994 | 한국전력 | " |
| 5 | " | 409-34 | 14,013 | "  | 8816C 032 | 한국전력 | " |

체 신 주 조 서

| 번호 | 소 재 지   | 지 번   | 위 치(STA)    | 방 향 | 전 주 번 호 | 소 관 청 | 비 고      |
|----|---------|-------|-------------|-----|---------|-------|----------|
| 1  | 남동구 고잔동 | 374-5 | NO.3+002.00 | 우측  |         | 한국통신  | 소로1-10호선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986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1-10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1-10호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신청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건설과(☎453-2722), 도시재생과(☎453-2955)에 갖추어 놓았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2일

## 남 동 구 청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72-25번지 일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72-24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고잔동 소로1-10호선 도로개설공사

### 3. 사업규모(변경)

- 지정: L=380.0m, B=10.0m, A=3,549.0㎡

○ 변경: L=380.0m, B=10.0m, A=3,812.8㎡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남동구청장(건설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실시계획고시일 ~ 2025.03.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따로 붙임

7.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8. 열람 장소

○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5, 남동구 소래로 633)

9.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용 지 조 서(번경)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br>(㎡) | 편입면적<br>(㎡) | 잔여면적<br>(㎡) | 소 유 자       |                         | 관 계 자 |                      |                  | 비 고          |
|----|-----|--------|----|-------------|-------------|-------------|-------------|-------------------------|-------|----------------------|------------------|--------------|
|    |     |        |    |             |             |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소유권<br>이외의<br>권리 |              |
| 1  | 고잔동 | 350-30 | 장  | 2           | 2           | 0           | 송**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 ** |       |                      |                  |              |
| 2  | 고잔동 | 350-34 | 도  | 1           | 1           | 0           | 송**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 ** |       |                      |                  |              |
| 3  | 고잔동 | 350-28 | 답  | 1           | 1           | 0           | 남동구         | -                       |       |                      |                  |              |
| 4  | 고잔동 | 586-33 | 도  | 10          | 10          | 0           | 국(건설<br>부)  | -                       |       |                      |                  |              |
| 5  | 고잔동 | 374-2  | 답  | 460         | 460         | 0           | 고** 외<br>2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고잔동 ***    | 남**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br>*** | 근저당권             |              |
| 6  | 고잔동 | 586-67 | 도  | 1,171       | 62          | 1,109       | 국(건설<br>부)  | -                       |       |                      |                  |              |
|    | 고잔동 | 586-74 | 도  | 61          | 61          | 0           | 국(건설<br>부)  | -                       |       |                      |                  | (분할)<br>지번변경 |
| 7  | 고잔동 | 350-18 | 도  | 5           | 5           | 0           | 윤**         | 인천광역시 서구<br>신현동 *** **  |       |                      |                  | 신규           |
| 8  | 고잔동 | 373-3  | 답  | 186         | 166         | 20          | 최**         | 인천광역시 연수구<br>동춘동 *** ** |       |                      |                  |              |
|    | 고잔동 | 373-3  | 답  | 172         | 172         | 0           |             |                         |       |                      |                  | (분할)<br>면적변경 |
| 9  | 고잔동 | 372-39 | 답  | 127         | 127         | 0           | 오**         | 인천광역시 연수구<br>연수동 *** ** |       |                      |                  |              |
| 10 | 고잔동 | 372-41 | 전  | 58          | 58          | 0           | 전**         | 인천광역시 연수구<br>동춘동 *** ** |       |                      |                  |              |
| 11 | 고잔동 | 372-32 | 전  | 157         | 157         | 0           | 김**<br>외 1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동 *** ** |       |                      |                  |              |
| 12 | 고잔동 | 375-2  | 답  | 288         | 288         | 0           | 오**         | 인천광역시 연수구<br>연수동 *** ** |       |                      |                  |              |
| 13 | 고잔동 | 372-38 | 답  | 16          | 16          | 0           | 오**         | 인천광역시 연수구<br>연수동 *** ** |       |                      |                  |              |
| 14 | 고잔동 | 379-30 | 전  | 43          | 43          | 0           | 강**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개로 *** ** | 인**   |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     | 근저당권<br>지상권      |              |
| 15 | 고잔동 | 372-68 | 답  | 8           | 8           | 0           | 남동구         | -                       |       |                      |                  | 신규           |
| 16 | 고잔동 | 379-38 | 전  | 102         | 102         | 0           | 남동구         | -                       |       |                      |                  | 신규           |

|    |     |        |   |       |     |       |             |                          |     |                           |             |              |
|----|-----|--------|---|-------|-----|-------|-------------|--------------------------|-----|---------------------------|-------------|--------------|
| 17 | 고잔동 | 372-77 | 전 | 23    | 23  | 0     | 남동구         | -                        |     |                           |             | 신규           |
| 18 | 고잔동 | 372-76 | 전 | 11    | 11  | 0     | 남동구         | -                        |     |                           |             | 신규           |
| 19 | 고잔동 | 379-37 | 전 | 103   | 103 | 0     | 남동구         | -                        |     |                           |             | 신규           |
| 20 | 고잔동 | 379-29 | 전 | 41    | 41  | 0     | 강**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고개로*** **  | 인** |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          | 근저당권<br>지상권 |              |
| 21 | 고잔동 | 376-2  | 전 | 375   | 375 | 0     | 오**         | 인천광역시 연수구<br>청능대로 *** ** |     |                           |             |              |
| 22 | 고잔동 | 372-49 | 전 | 98    | 98  | 0     | 강** 외<br>3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고개로*** **  | 인** |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          | 근저당권<br>지상권 |              |
| 23 | 고잔동 | 372-64 | 전 | 11    | 11  | 0     | 여** 외<br>4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고잔동 *** **  | 서**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br>***      | 근저당권        |              |
| 24 | 고잔동 | 377-2  | 전 | 682   | 639 | 43    | 전**         | 인천광역시 남동구<br>장승남로 *** ** | 죽** |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br>죽변중앙로 *** | 근저당권<br>지상권 |              |
|    | 고잔동 | 377-2  | 전 | 625   | 625 | 625   | 전**         | 인천광역시 남동구<br>장승남로 *** ** | 죽** |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br>죽변중앙로 *** | 근저당권<br>지상권 | (분할)<br>면적변경 |
| 25 | 고잔동 | 409-8  | 잡 | 1,103 | 8   | 1,095 | 김** 외<br>1인 | 서울특별시 서초구<br>명달로*** **   | 주**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          | 근저당권        |              |
| 26 | 고잔동 | 409-34 | 답 | 67    | 0   | 67    | 김**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 **  | 농**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          | 근저당권        |              |
| 27 | 고잔동 | 409-40 | 답 | 165   | 165 | 0     | 김**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 **  | 농**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          | 근저당권        |              |
| 28 | 고잔동 | 409-41 | 답 | 5     | 0   | 5     | 김**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 **  | 농**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          | 근저당권        |              |
| 29 | 고잔동 | 409-31 | 도 | 11    | 11  | 0     | 주**         | 인천광역시 중구<br>서해대로 *** **  | 중**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 근저당권        |              |
| 30 | 고잔동 | 408    | 잡 | 954   | 0   | 954   | 권**         | 서울특별시 강남구<br>대치동 *** **  | 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br>***      |             |              |
| 31 | 고잔동 | 408-4  | 잡 | 639   | 639 | 0     | 권**         | 서울특별시 강남구<br>대치동 *** **  |     |                           |             |              |
| 32 | 고잔동 | 379-6  | 도 | 4,002 | 156 | 3,846 | 남동구         | -                        |     |                           |             |              |
|    | 고잔동 | 379-36 | 도 | 163   | 163 | 0     | 남동구         | -                        |     |                           |             | (분할)<br>지번변경 |
| 33 | 고잔동 | 374    | 장 | 1,407 | 15  | 1,392 | 고** 외<br>1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고잔동 *** **  | 남**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br>***      | 근저당권        |              |
|    | 고잔동 | 374-9  | 장 | 3     | 3   | 0     | 고** 외<br>1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고잔동 *** **  | 남**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br>***      | 근저당권        | (분할)<br>지번변경 |
| 34 | 고잔동 | 379-22 | 잡 | 122   | 7   | 115   | 강**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고개로*** **  | 인** |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          | 근저당권<br>지상권 |              |
|    | 고잔동 | 379-22 | 잡 | 72    | 7   | 65    | 강**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인** |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          | 근저당권        | (분할)         |

|     |     |        |   |          |         |          |             |                           |     |                 |              |
|-----|-----|--------|---|----------|---------|----------|-------------|---------------------------|-----|-----------------|--------------|
|     |     |        |   |          |         |          | 논고개로*** **  |                           |     | 지상권             | 면적변경         |
| 35  | 고잔동 | 372-16 | 장 | 1,936    | 2       | 1,934    | 김** 외<br>1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고잔로 *** **   |     |                 |              |
|     | 고잔동 | 372-16 | 장 | 1,933    | 2       | 1,931.0  | 김** 외<br>1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고잔로 *** **   |     |                 | (분할)<br>면적변경 |
| 36  | 논현동 | 738-8  | 공 | 247,750  | 2       | 247,748  | 남동구         | -                         |     |                 |              |
| 37  | 고잔동 | 379-2  | 잡 | 778      | 0       | 778      | 이**         | 서울특별시 금천구<br>독산동 *** **   | 중**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근저당권         |
| 38  | 고잔동 | 379-34 | 잡 | 2        | 2       | 0        | 이**         | 서울특별시 금천구<br>독산동 *** **   | 중**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근저당권         |
| 39  | 고잔동 | 372-72 | 장 | 3        | 3       | 0        | 김** 외<br>1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고잔로 *** **   |     |                 | 신규           |
| 40  | 고잔동 | 372-74 | 장 | 3        | 3       | 0        | 이**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고잔로 *** ** |     |                 | 신규           |
| 41  | 논현동 | 787    | 도 | 61,216.2 | 16.8    | 61,199.4 | 인천<br>광역시   | -                         |     |                 | 신규           |
| 기 정 |     | 합 계    |   | 262,668  | 3,549   | 259,119  |             |                           |     |                 |              |
| 변 경 |     | 합 계    |   | 67,008.2 | 3,812.8 | 63,195.4 |             |                           |     |                 |              |

지 장 물 건 조 서(당초)

| 일련<br>번호 | 동  | 지 번    | 물건의<br>종류 | 구조 및 규격 |       | 수 량<br>(㎡) | 수 량<br>(개소) | 소유자 |                   | 비 고 |
|----------|----|--------|-----------|---------|-------|------------|-------------|-----|-------------------|-----|
|          |    |        |           |         |       |            |             | 성 명 | 주 소               |     |
| 1        | 고잔 | 374-2  | EGI웬스     | 출입문     | 웬스    | 584        |             | 고**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     |
|          |    |        | 계근대       | 철재      |       |            | 1           |     |                   |     |
|          |    |        | 기타        | 집계      | 배전반   |            | 2           |     |                   |     |
| 2        | 고잔 | 372-32 | 철망+강관     | 출입문     | 웬스    | 119        |             | 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     |
|          |    |        | 화단        | 라일락     |       |            | 3           |     |                   |     |
|          |    |        |           | 백일홍     |       |            | 3           |     |                   |     |
|          |    |        |           | 기타      |       |            |             |     |                   |     |
|          |    |        | 컨테이너      | 휴게소     |       |            | 1           |     |                   |     |
|          |    |        |           | 창고      |       |            | 1           |     |                   |     |
| 3        | 고잔 | 372-16 | PE제품      | 저장시설    | Φ1500 |            | 8           | 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 |     |
|          |    |        |           |         | Φ800  |            | 1           |     |                   |     |

|     |    |        |       |     |      |       |    |     |                    |  |
|-----|----|--------|-------|-----|------|-------|----|-----|--------------------|--|
|     |    |        | 모터기   |     |      |       | 1  |     |                    |  |
|     |    |        | 기계장치  | 냉각수 |      |       | 1  |     |                    |  |
|     |    |        | 저장소   | LPG | 바닥기초 | 1     | 1  |     |                    |  |
| 4   | 고잔 | 376-2  | 철재    | 출입문 |      | 14    |    | 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 |  |
| 5   | 고잔 | 376-2  | 철재    | 웬스  |      | 127   |    | 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 |  |
| 6   | 고잔 | 377-2  | 메쉬웬스  | 출입문 |      | 18    |    | 오**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   |  |
|     |    |        | 컨테이너  | 휴게소 |      |       | 1  |     |                    |  |
|     |    |        | 컨테이너  | 창고  |      |       | 1  |     |                    |  |
| 7   | 고잔 | 409-34 | 천막+강관 | 창고  |      | 168   |    | 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  |
|     |    |        | 컨테이너  | 사무실 |      |       | 1  |     |                    |  |
|     |    |        | 컨테이너  | 창고  |      |       | 2  |     |                    |  |
| 8   | 고잔 | 408    | 철재    | 웬스  | 출입문  | 514   |    | 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  |  |
|     |    |        | 천막+강관 | 창고  |      | 135   |    |     |                    |  |
|     |    |        | 컨테이너  | 사무실 |      |       | 1  |     |                    |  |
|     |    |        | 컨테이너  | 창고  |      |       | 1  |     |                    |  |
| 소 계 |    |        |       |     |      | 1,679 | 30 |     |                    |  |

지 장 물 건 조 서(변경)

| 일련<br>번호 | 동  | 지 번    | 물건의<br>종류 | 구조 및 규격 |    | 전체수량  | 편입수량  | 소유자 |                   | 비 고 |
|----------|----|--------|-----------|---------|----|-------|-------|-----|-------------------|-----|
|          |    |        |           |         |    |       |       | 성 명 | 주 소               |     |
| 1        | 고잔 | 374-2  | 출입문       | 함석      |    | 12.5m | 12.5m | 고**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     |
|          |    |        | 담장        | 함석      |    | 70.0m | 54.6m |     |                   |     |
|          |    |        | 칸막이       | 함석      |    | 30.6m | 30.6m |     |                   |     |
|          |    |        | 계근대       | 계근대     |    | 20.2㎡ | 20.2㎡ |     |                   |     |
|          |    |        | 집계        | 강재      |    | 1개소   | 1개소   |     |                   |     |
|          |    |        | 배전반       |         |    | 1개소   | 1개소   |     |                   |     |
| 2        | 고잔 | 372-32 | 철망+강관     | 출입문     | 웬스 | 11.5m | 11.5m | 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     |

|   |    |                   |         |            |  |        |       |     |                    |  |
|---|----|-------------------|---------|------------|--|--------|-------|-----|--------------------|--|
|   |    |                   | 철망+강관   | 담장         |  | 21.7m  |       |     |                    |  |
|   |    |                   | 컨테이너    | 창고, 휴게소    |  | 30.0㎡  |       |     |                    |  |
|   |    |                   |         | 수목         |  | 6주     |       |     |                    |  |
| 3 | 고잔 | 375-2             | 저장통     | FRP        |  | 9개소    |       | 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  |
|   |    |                   | 압출기     | 모터기        |  | 1개소    |       |     |                    |  |
|   |    |                   | 냉각시설    | 기계시설       |  | 1.6㎡   |       |     |                    |  |
|   |    |                   | LPG저장소  | 콘크리트       |  | 1.3㎡   |       |     |                    |  |
| 4 | 고잔 | 376-2             | 파지압축기   | 기계장치       |  | 1식     |       | 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 |  |
|   |    |                   | 담장      | 함석         |  | 27.2m  | 6.2m  |     |                    |  |
|   |    |                   | 담장      | 철판         |  | 34.6m  | 13.8m |     |                    |  |
| 5 | 고잔 | 377-2             | 담장      | 철판         |  | 17.7m  | 3.0m  | 정** | 010-****           |  |
|   |    |                   | 담장      | 철판         |  | 26.4m  | 9.8m  |     |                    |  |
| 6 | 고잔 | 377-2             | 창고      | 컨테이너       |  | 18.0㎡  | 18.0㎡ | 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 |  |
|   |    |                   | 담장      | 함석         |  | 41.8m  | 18.4m |     |                    |  |
|   |    |                   | 담장      | 샌드위치<br>패널 |  | 4.8m   | 1.7m  |     |                    |  |
|   |    |                   | 출입문     | 메쉬웬스       |  | 1.7m   | 1.7m  |     |                    |  |
|   |    |                   | 담장      | 메쉬웬스       |  | 11.8m  | 0     |     |                    |  |
|   |    |                   | 사무실, 창고 | 컨테이너       |  | 36.0m  | 0     |     |                    |  |
| 7 | 고잔 | 409-40<br>(409-7) | 창고      | 강관, 천막     |  | 117.4㎡ | 45.9㎡ | 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  |
|   |    |                   | 창고      | 컨테이너       |  | 15.0㎡  | 15.0㎡ |     |                    |  |

|   |    |                |         |               |  |        |       |     |                 |  |
|---|----|----------------|---------|---------------|--|--------|-------|-----|-----------------|--|
| 8 | 고잔 | 408-4<br>(408) | 창고      | 강관,천막         |  | 195.1㎡ | 68.1㎡ | 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 |  |
|   |    |                | 사무실, 창고 | 컨테이너          |  | 54.0㎡  | 54.0㎡ |     |                 |  |
|   |    |                | 옹벽      | 콘크리트          |  | 22.5m  | 3.8m  |     |                 |  |
|   |    |                | 담장      | 강관,함석,<br>방진막 |  | 133.0m | 41.0m |     |                 |  |
|   |    |                | 출입문     | 각파이프,<br>목재   |  | 6.7m   | 6.7m  |     |                 |  |
|   |    |                |         |               |  |        |       |     |                 |  |

한 전 주 조 서

| 번호 | 소 재 지   | 지 번    | 위 치(STA) | 방 향 | 전 주 번 호   | 소 관 청 | 비 고     |
|----|---------|--------|----------|-----|-----------|-------|---------|
| 1  | 남동구 고잔동 | 374-2  | 2,008    | 좌측  | 8716X 981 | 한국전력  | 소로-10호선 |
| 2  | "       | 586-2  | 3,002    | 우측  | 8716X 995 | 한국전력  | "       |
| 3  | "       | 372-39 | 3,018    | "   | 8716X 993 | 한국전력  | "       |
| 4  | "       | 372-39 | 4,006    | "   | 8716X 994 | 한국전력  | "       |
| 5  | "       | 409-34 | 14,013   | "   | 8816C 032 | 한국전력  | "       |

체 신 주 조 서

| 번호 | 소 재 지   | 지 번   | 위 치(STA)    | 방 향 | 전 주 번 호 | 소 관 청 | 비 고      |
|----|---------|-------|-------------|-----|---------|-------|----------|
| 1  | 남동구 고잔동 | 374-5 | NO.3+002.00 | 우측  |         | 한국통신  | 소로1-10호선 |

##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39호

#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 고시

남동구 간석동 229-5번지 일원 등에 신설된 지적기준점(도근점)에 대하여 그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6일

## 남 동 구 청 장

| 측량기준점<br>명칭및번호 | 좌 표                |      |
|----------------|--------------------|------|
|                | X(m)               | Y(m) |
|                | 붙 임                |      |
| 기 준 원 점 명      | 세계측지계좌표            |      |
| 소 재 지          | 남동구 간석동 229-5번지 일원 |      |
| 설 치 일 자        | 붙임참조               |      |
| 표 지 재 질        | 붙임참조               |      |
| 측량성과 보관장소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      |
| 비 고            | 신설(2점)             |      |

붙임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표(별도첨부) 1부. 끝.

##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표

| 연번 | 구분    | 기준점명 | 세계        |           | 중부 |   | 가리 |   | 소재지     | 설치일(관측일)    | 표지재질 | 비고 |
|----|-------|------|-----------|-----------|----|---|----|---|---------|-------------|------|----|
|    |       |      | X         | Y         | X  | Y | X  | Y |         |             |      |    |
| 1  | 지적도근점 | 8537 | 541015.66 | 173975.50 |    |   |    |   | 간석동 218 | 2022.04.25. | 표철   | 신설 |
| 2  | 지적도근점 | 8538 | 541015.20 | 174026.01 |    |   |    |   | 간석동 218 | 2022.04.25. | 표철   | 신설 |

##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40호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6일

##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40번길 10 (구월동) 외 2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53번길 30 (간석동) 외 18건

|               |       |           |             |              |               |     |
|---------------|-------|-----------|-------------|--------------|---------------|-----|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효력발생일     | 도로명<br>부여사유 | 도로명주소<br>고시일 | 도로명주소<br>부여사유 | 비고  |
| 별 도 열 람 (3건)  |       |           |             |              |               |     |
| 도로명주소         |       | 도로명주소 폐지일 |             | 폐지 사유        |               | 비 고 |
| 별 도 열 람 (19건) |       |           |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http://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br>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효력발생일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비고 |
|----|--------------------------|--------------------------------|------------|-----------------------------------------------|-----------|-----------------------------------------------|----|
| 1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남촌동 289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남촌로84번길 17 (남촌동)  | 2009.11.16 | 남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br>8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br>도로  | 2022.5.6. |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촌로84번길<br>기초구간에위치하여17을건물번호로부여  |    |
| 2  | 인천광역시 남동구<br>수산동 275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배려터로 44-1 (수산동)   | 2011.03.24 | 배가 닿았다는 옛 지역 유래를<br>인용하여 제명                   | 2022.5.6. |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배려터로<br>기초구간에위치하여44-1을건물번호로부여   |    |
| 3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47-45 | 인천광역시 남동구<br>석산로240번길 10 (구월동) | 2009.11.16 | 석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br>24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br>분기하는 도로 | 2022.5.6. |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산로240번길<br>기초구간에위치하여10을건물번호로부여 |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 연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br>폐지일 | 폐지 사유           | 비고   |
|----|------------------------------|--------------|-----------------|------|
| 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40번길 8 (구월동)   | 2022.5.6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2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좌로35번길 8 (구월동)    | 2022.5.6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289번길 72 (고잔동) | 2022.5.6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94번길 16 (만수동)   | 2022.5.6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5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217번길 18 (간석동)  | 2022.5.6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2번길 32 (간석동)   | 2022.5.6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거화빌딩 |
| 7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2번길 33 (간석동)   | 2022.5.6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서현타운 |

|    |                                |          |                 |       |
|----|--------------------------------|----------|-----------------|-------|
| 8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4번길 20 (간석동)     | 2022.5.6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4번길 24 (간석동)     | 2022.5.6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대창맨션  |
| 10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4번길 25 (간석동)     | 2022.5.6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예작파크뷰 |
| 1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4번길 29 (간석동)     | 2022.5.6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4번길 31 (간석동)     | 2022.5.6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신화빌라  |
| 1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8번길 23 (간석동)     | 2022.5.6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일광주택  |
| 14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8번길 28 (간석동)     | 2022.5.6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15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8번길 32 (간석동)     | 2022.5.6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1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361 (고잔동)       | 2022.5.6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17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289번길 66 (고잔동)   | 2022.5.6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18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411번길 16-12 (구월동) | 2022.5.6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19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53번길 30 (간석동)    | 2022.5.6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41호

#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남동구 고시 제2017-140호(2017.12.11.)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남동구 고시 제2019-20호(2019.2.15.)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남동구 고시 제2020-137호(2020. 8. 21)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남동구 용천로105번길 19 일원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0일

## 남 동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05번길 19 일원(구월동 70-16)
  - 나. 면적 : 55,707.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길)
  -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876번길 24, 2층(구월동, 금제빌딩)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22년 5월 10일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토지이용계획(변경)

| 합계       | 공동주택 용지<br>(상가포함) | 정비기반시설   |         |         |         |       | 그 밖의 용도 |            |            |
|----------|-------------------|----------|---------|---------|---------|-------|---------|------------|------------|
|          |                   | 소계       | 공원      | 도로      | 공공청사    | 주차장   | 소계      | 종교<br>(존치) | 종교<br>(분양) |
| 55,707.9 | 42,756.8          | 11,536.9 | 6,046.6 | 3,908.3 | 1,030.6 | 551.4 | 1,414.2 | 612.3      | 801.9      |

2) 건축 연면적 : 153,460.9006m<sup>2</sup>

3) 건축물 규모 : 지하3층~지상35층 아파트 11개동 1,11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변경)

| 공급대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     |      |      |     |      |      | 상가면적<br>(m <sup>2</sup> ) | 그 밖의 건축시설<br>면적(m <sup>2</sup> ) |        |
|------------|--------------------|-----|------|------|-----|------|------|---------------------------|----------------------------------|--------|
|            | 계                  | 39형 | 59A형 | 59B형 | 74형 | 84A형 | 84B형 |                           | 종교/근린생<br>활시설                    | 종교(존치) |
| 계          | 1,115              | 60  | 344  | 365  | 134 | 129  | 83   | 685.1728                  | 801.90                           | 612.30 |
| 토지등<br>소유자 | 616                | -   | 239  | 164  | 101 | 69   | 43   | 51.9723                   | -                                | 612.30 |
| 보류시설       | 5                  | -   | 5    | -    | -   | -    | -    | -                         | -                                | -      |
| 일반분양       | 434                | -   | 100  | 201  | 33  | 60   | 40   | 633.2005                  | 801.90                           | -      |
| 임 대        | 60                 | 60  | -    | -    | -   | -    | -    | -                         | -                                | -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변경)

| 구분                  | 신설(무상귀속) |         |         |       |         | 폐지<br>(무상양여 : 10,738.2) |          |       |
|---------------------|----------|---------|---------|-------|---------|-------------------------|----------|-------|
|                     | 계        | 공원      | 도로      | 주차장   | 공공청사    | 계                       | 도로       | 주차장   |
| 규모(m <sup>2</sup> ) | 11,536.9 | 6,046.6 | 3,908.3 | 551.4 | 1,030.6 | 10,738.2                | 10,343.8 | 394.4 |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2020. 6. 22. ~ 2020. 10. 31.

6. 기타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8392)에 비치하고 조합원 등에게 보입니다. 끝.

##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42호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1일

##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 699-22 (남촌동) 외 1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8번길 25 (간석동) 외 44건

|               |       |           |             |              |               |     |
|---------------|-------|-----------|-------------|--------------|---------------|-----|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효력발생일     | 도로명<br>부여사유 | 도로명주소<br>고시일 | 도로명주소<br>부여사유 | 비고  |
| 별 도 열 람 (2건)  |       |           |             |              |               |     |
| 도로명주소         |       | 도로명주소 폐지일 |             | 폐지 사유        |               | 비 고 |
| 별 도 열 람 (45건) |       |           |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http://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br>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효력발생일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비고 |
|----|-------------------------|--------------------------------|------------|----------------------------------------------|------------|-----------------------------------------------|----|
| 1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남촌동 21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비류대로 699-22 (남촌동) | 2009.7.10  |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의 아들인 비류가<br>남하하여 세운 나라에서 이름에서 유래 | 2022.5.11. |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비류대로<br>기초구간에위치하여699-22를건물번호로부여 |    |
| 2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고잔동 379-4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고잔로73번길 9 (고잔동)   | 2009.11.16 | 고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br>74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 2022.5.11. |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고잔로73번길<br>기초구간에위치하여9를건물번호로부여   |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 연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br>폐지일 | 폐지 사유           | 비고 |
|----|------------------------------|--------------|-----------------|----|
| 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8번길 25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2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8번길 29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8번길 25-1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4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8번길 21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5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8번길 19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8번길 15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7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8번길 13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8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8번길 9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8번길 7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                             |           |                 |  |  |
|----|-----------------------------|-----------|-----------------|--|--|
| 10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8번길 5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 1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4번길 17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 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8번길 10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 1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8번길 12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 14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8번길 16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 15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8번길 18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 1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8번길 20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 17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8번길 22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 18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8번길 24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 1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8번길 26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 20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4번길 21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 2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8번길 8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 22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8번길 6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 23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217번길 16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 24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4번길 30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 25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4번길 28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 2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2번길 31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 27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4번길 16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 28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4번길 14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 2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2번길 11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 30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4번길 19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 3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4번길 15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    |                             |           |                 |  |
|----|-----------------------------|-----------|-----------------|--|
| 32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4번길 13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3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4번길 11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34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4번길 7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35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4번길 5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3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4번길 6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37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2번길 9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38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2번길 5-1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3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2번길 5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40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4번길 4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4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4번길 8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42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4번길 12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4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241번길 19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44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241번길 17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
| 45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241번길 15 (간석동) | 2022.5.11 |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  |